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CONTENTS

I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지침 안내

03

1.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04
2.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07
3.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 자격관리	09
4.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관리	13
5. 제공기관 회계관리 안내	20
6. 제공기관 안전관리 안내	24
7. 제주지원단 교육운영 안내	25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안내	32
9. 서비스 제공 안내	34
10. 2025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37

II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43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아동·청소년]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45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8
3.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50
4.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52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55
6.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서비스	57

[가 족]

7. 영유아가족예술지원서비스	59
-----------------	----

[장애인]

8. 음악재활힐링서비스	62
--------------	----

[성 인]

9.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65
10. 성인건강코칭서비스	69
11. 5060인생예찬! 장년층음악정서지원서비스	71

[노 인]

12. 건강나눔안마서비스	75
13.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76

[청 년]

14.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청년사회사업단 수행 사업으로 서비스 진행 여부 3월 중 확정 예정)	
---	--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80

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84

III

Q & A

93

참고 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5년)	97
참고 2. 적용 연령 출생년도 기준표(2025년)	10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각 사업의 안내서를 준용

-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지침 안내

1.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2.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3.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관리
4. 제공기관 회계관리 안내
5. 제공기관 안전관리 안내
6. 제공기관 교육운영 안내
7.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안내
8. 서비스 제공 안내
9. 2025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구조

세부사업명	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지원계정 (부처 직접편성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개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영유아·아동·청소년 (6개 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가족 (1개 사업)	영유아가족예술지원서비스	
장애인 (1개 사업)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성인 (3개 사업)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성인건강코칭서비스	
	5060인생예찬! 장년층음악정서지원서비스	
노인 (2개 사업)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청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개 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사회사업단 수행 사업으로 서비스 진행 여부 3월중 확정 예정)	

사업 주요 특징

- **제공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또는 현물보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
- **서비스 내용: 지역의 자율성 반영**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 내용에 반영
- **이용자 선정: 지역의 예산 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지역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서비스를 이용
- **서비스 가격 체계: 이용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추진 주체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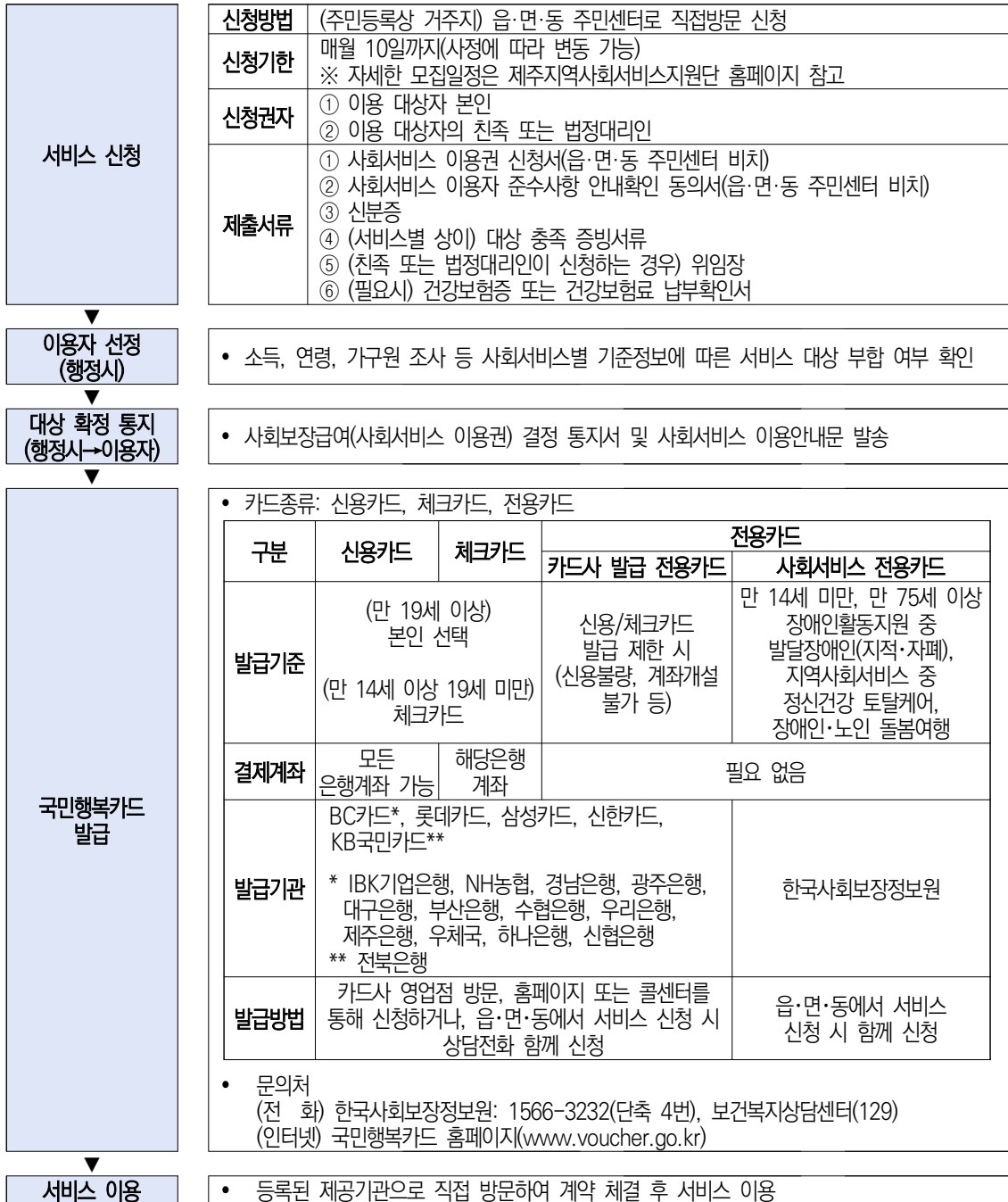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약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관리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예산조정 및 집행관리 -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수립 -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시·도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 시·도 성과관리 - 시·군·구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 시·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총괄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평가 등)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지원 -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재 양성 - 사회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 -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시·군·구 (제주시·서귀포시)	-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기획·관리 및 시행 -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 분석 및 예약금 집행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 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 -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무관리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제공인력 급여 지급 - 바우처 시스템 활용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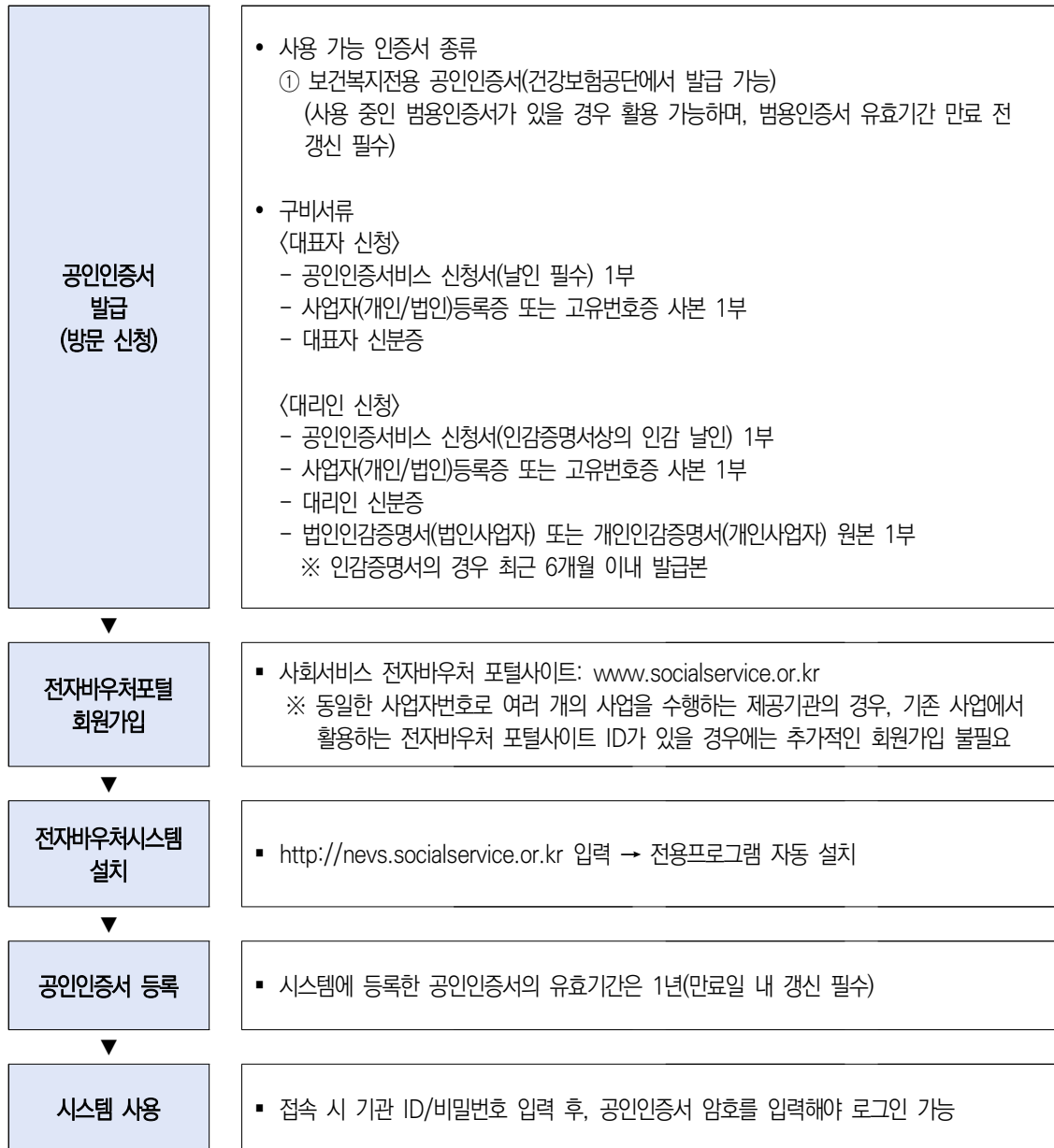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이용자의 바우처 신청 방법



제공자의 시스템 등록 방법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 자격관리

01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서비스 신청

- 이용자 통보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내 제공기관 선택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현황자료에 대한 정보 안내
- 예시 이용자가 제공기관 선택에 제공기관 품질관리 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등에 안내
- 해당 제공자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3 서비스 이용 제한

1. 서비스 이용 제한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시·도 지침에 따라 1인당 동시에 1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음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동일기간 내 중복수혜 불가
 - 분류 1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분류 2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달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분류 3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2.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당해연도 서비스이용 불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2. 서비스제공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3.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로 같음하여 직권 조치
4.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용자의 준수사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됨.
2.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됨.
3.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4.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참 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총 제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처분권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제한기간 만큼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은 사회서비스 개월 수로 나누어 이용자의 이용권에서 매달 감량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바. 라목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는 이용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다목1), 2), 4) 또는 5)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을 경고로 같음할 수 있다.
- 사. 처분권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취소 및 제한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발급 결정 취소
나.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아래기간동안 이용권 사용 제한
1)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액(이하 이 표에서 “부당이득금액”이라 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5일
2) 부당이득금액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3) 부당이득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15일
4) 부당이득금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5) 부당이득금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15일
6) 부당이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7) 부당이득금액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		7개월 15일
8) 부당이득금액이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9) 부당이득금액이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개월 15일
10) 부당이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다. 법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	다음의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제한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		6개월
2)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6개월
3) 제공인력에 대하여 폭행, 상해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해당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2개월
나) 해당 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6개월
4) 제공인력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월
5)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1개월

4. 이용자 취소 및 제한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2)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제15조 위반행위 중 성희롱의 경우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 위원회* 운영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위원회 구성안 예시 : 제공기관 장, 지자체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3~7인으로 구성하되
제공기관장, 지자체 공무원은 필수 참석 대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참 고

이용권 취소 및 제한 처리방법

- 이용권 취소 및 제한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업무처리기능 개발을 검토중임에 따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는 이용권 제한처분이 있는 경우, 제한처분에 따라 조정된 서비스 이용(제공) 가능한 월 한도액을 안내하고, 최대 1년 동안 예외결제를 통해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
- 추후 이용권 제한 자동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관리

1 제공기관 등록 안내

1) 등록기준 공통사항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공기관 등록 가능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자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①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사무실 제 외) 33㎡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필요) ※ 다만,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장인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서비스 제공 전용공간 기준은 동일)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사업일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청소년유해업소가 50m이내(원형기준)에 없는 곳에 소재한 곳으로 시설 등록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기본서비스) ※ 공간 확보 의무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 33㎡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불가 * 사무실 기준 : 사무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와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		
②장비 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바우처 전용 단말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수한 도구 또는 재료 등)		
③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단, 서비스 제공 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 규모는 반드시 준수(1:1, 1:8 등)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공인력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 ↳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가. 기본서비스(돌봄,가사),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공인력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 ↳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하지 않음(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예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나. 특화서비스(심리지원)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하지 않음(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예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제공기관장은 2인 이상(공동대표) 등록 불가		
④인력 자격기준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별 별도 공시(사업별 기준정보 내 <제공인력 자격기준> 참고)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제공인력] 가. 재가방문형서비스(산모·신생아 재가방문서비스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별 제공인력 별도의 자격기준 확인 요청 ○ (돌봄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 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를 2명이 각각 제공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래의 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 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가사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식사관리서비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장 자격 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영양관리서비스) (필수인력) -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2)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3)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장 자격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병원 동행 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 (심리 지원 서비스)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자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마) 청소년상담사(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 제공인력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으로 등록 불가 ① 파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방법 •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제공기관의 장 • (결격사유 확인 방법) - 파성년 후견인 : 사법기관(법원)의 파성년후견 선고 사실 ※ 지자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보결과를 활용하거나 채용하려는 인력이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http://crims.police.go.kr) (제공기관) 시설(기관) 정보등록 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클릭 1)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 시설(기관) 정보등록시 관련법령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클릭 2) 중빙자료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지로 스캔하여 첨부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검증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 필요 * 취업예정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알려주어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통해 발급동의를 받을 수 있음 (취업예정자)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달받은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메인화면에 알림마당(자료실)에서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매뉴얼(7p)에서 확인 가능		

2) 제공기관 등록 기타사항

(1) 동일 대표가 2개 이상 제공기관(사업자번호 상이) 등록(2019. 4. 1. 시행)

- 동일 대표가 여러 개의 제공기관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관리책임자” 배치 필수
 - ※ 관리책임자 :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자(2020. 7. 1. 시행)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는 1개소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2) 추가 확보시설 범위(2021. 1. 1. 시행)

- 추가 확보시설 : 제공기관의 서비스 전용면적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 복지관 등의 소유시설 임차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시설을 의미
- 반드시 서비스 제공 전에 제공기관 소재지의 행정시로 추가 확보시설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완료 필요(2020. 1. 1. 시행)
 - * 미등록 및 미승인된 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등록기준(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조치
- 제공기관 내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추가 확보시설 등록 및 승인 불가
-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추가 확보시설로 등록할 수 없음
- 학원, 체육관 등 시설에서 일부 시간에 한해 임대하는 경우 추가 확보시설 등록 및 승인 불가 (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관에서 갖추기 어려운 수영장, 축구장 등의 대형시설에 한하여 등록 가능)

2 제공인력 등록 및 관리

1) 제공인력 등록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 사항(계약,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 제공기관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 후 시·도 보고
 - ※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21일 이전에 시스템 입력, 인력 관련 서류는 14일 이내에 시·도 보고

2) 제공인력 관리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연차 및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대 사회보험 가입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시간 및 급여가 많은 기관에서 가입)

- 월 4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 제공기관 대표의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도 위 시간 기준에 따른 사회보험가입 필수

- 퇴직금 적립: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
-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서비스 제공계획에 부합하는 충실한 서비스 제공 여부 관리
- 제공인력 참여 제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불가(확인 시 관련 비용 환수 조치)

(예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도서·벽지 지역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 투입 가능)

3)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 제공인력 정보 등록 또는 다운로드 되는 양식(엑셀 등)에 제공인력 정보 업데이트 후 해당 월 급여 입력
 - 전월 급여에 대하여 매월 6일부터 25일까지 시스템 등록
 - 매월 급여 등록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유무 입력
- ※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3

제공인력 경력기간 산정방법 (2021. 1. 1.시행)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① 기관사항(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② 인적사항
③ 근무기간 및 시간, ④ 업무내용, ⑤기관직인
- 주 40시간(1일 8시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 근무기간 전체 인정
- 시간제 경력은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

* 총 330시간 이상: 3개월 경력 인정, 총 670시간 이상: 6개월 경력 인정
총 1,300시간 이상: 1년 경력 인정, 총 2,680시간: 2년 경력 인정

제공기관 회계관리 안내

1 제공기관 회계관리

1) 회계관리 원칙

• 관리원칙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회계는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분리하여 관리
- * 별도 통장 개설 필요

• 회계기준

- 자체 회계기준이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준 적용(단, 자체 회계기준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
-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형태의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
-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운영기준] 참고

• 서류보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 ※ 등록 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 주의사항

-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부지원금(보조금)**은 본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회서비스 또는 보조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타 보조금 사업을 동시에 제공하여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관리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회계 관리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분리하여 관리, 바우처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 서비스별로 회계 분리	제공인력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제공인력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특화서비스 제외)

2 회계 운영기준

※ 본 기준은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한하여 적용

1) 운영기준

- 목적

- 본 기준은 제주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회계 운영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도모

- 기본원칙

- 제주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고보조금으로, 제공기관은 사업비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2) 수입관리

- 수입의 원칙

-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익 및 차입금(투자금)을 의미하며, 수입금을 수납한 익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계좌(이하 '바우처 계좌')로 예입(입금) 처리하여야 함.

- 수입의 종류

- 1) 정부지원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계좌로 정기지급(또는 수시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비용(바우처 카드 결제 금액)
- 2)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자가 월마다 제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용자가 바우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수납한 익일까지 바우처 계좌에 예입
*카드로 지급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 대금을 익일까지 바우처 계좌로 이체
- 3) 일반이용금: 바우처 이용권이 만료되었으나 지속해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지급한 비용
- 4) 대응투자금: 바우처 사업의 운영을 위한 차입금 또는 투자금
- 5) 기타수입금: 바우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 수입의 증빙

- ① 정부지원금: 바우처 계좌로 입금된 내역
- ② 본인부담금: 지급 방법에 따라 상이
 - * 계좌로 지급한 경우: 바우처 계좌로 입금된 내역
 -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인부담금 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 * 카드로 지급한 경우: 카드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 ③ 일반이용금: 본인부담금과 동일
- ④ 대응투자금: 차입(또는 투자)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대출약정서, 투자약정서 등)

- 수입 관리 방법

모든 수입은 바우처 계좌로 예입(입금) 처리하고, 수입 현황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배포하는식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기재 요령에 따라 관리

3) 지출 관리

- 지출 원칙

제주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에 의해 발생한 비용 및 이익금을 의미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계좌(이하 ‘바우처 계좌’)에 의한 전자거래(인터넷뱅킹 등) 또는 전용 체크카드로 지출을 해야한다.

- 지출 종류

- ① 인건비: 월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 인력에 대한 비용(제공기관장 인건비도 포함)
 - *단, 제공기관장 인건비는 정액으로 설정, 그 외 금액은 이익금으로 분류
- ② 사회보험료: 종사자 4대보험(기관부담금), 시설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야외체험활동에 따른) 여행자보험 등
- ③ 재료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한 모든 비용(타 항목에 속하지 않는 모든 비용)
- ④ 시설투자비: 임차료, 시설개보수비 등 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 ⑤ 교육홍보비: 종사자 교육비, 사업홍보비
- ⑥ 직접반납금: 제공기관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직접 반납해야 하는 과오청구 비용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납금
- ⑦ 이익금: 위의 ① ~ ⑥ 항목 지출 후 남은 금액(원금 회수 가능한 전세금 또는 시설 매수금은 이익금으로 분류)

• 지출의 증빙

※ 아래의 열거된 증빙서류 외에도 지출금액과 지출의 객관성 및 타당성 증빙 가능한 서류라면 대체 첨부 가능

- ① 인건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 ②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고지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이체내역
- ③ 재료비: 카드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구매 내역(품목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구매 내역 영수증, 견적서 및 납품서 등)
- ④ 시설투자비
 - 월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임대인이 예금주인 계좌로의 이체)
 - 연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연 임차료를 월별로 환산한 금액의 이체내역(제공기관장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 연 임차료 이체내역(임대인이 예금주인 계좌로의 이체)
 - 시설투자비: 견적서 및 납품서(공사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 ⑤ 교육홍보비
 - 종사자 교육 관련 비용: 교육기관에서 청구하는 비용과 납부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업 홍보 관련 비용: 견적서 및 납품서
- ⑥ 직접반납금: 계좌이체내역(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정한 계좌로의 이체)
- ⑦ 이익금: 계좌이체내역(제공기관장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 가능)

• 지출 관리 방법

- 모든 지출은 전자거래 또는 전용 체크카드로 처리해야 하며, 지출 현황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배포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기재 요령에 따라 관리
- 사업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사회보험료, 시설투자비 등)은 전체 매출액에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출

예시) 제공기관 A

- (운영사업) 기관의 기존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재활·심리지원사업
- (매출비율) 기존 사업(8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5%), 성인재활·심리지원사업(5%)
-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총 450,000원
 - # 기존 사업 회계에서 지출할 금액: $450,000\text{원} \times 80\% = 360,000\text{원}$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출할 금액: $450,000\text{원} \times 15\% = 67,500\text{원}$
 - # 성인재활·심리지원사업에서 지출할 금액: $450,000\text{원} \times 5\% = 22,500\text{원}$

제공기관 안전관리 운영 안내

1 제공기관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원칙

- 제공기관의 대표자는 종사자, 이용자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를 보호·감독해야하며 다양한 외부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모든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관련 기관 및 이용자 보호자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2) 안전관리 운영

• 안전관리 운영

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연 1회)

-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발생 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시 마다 차량이용, 여행·체험활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및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이용자 및 제공인력 안전교육 실시(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안전교육' 내용 참고)

다. 비상연락체계 구축

라. 각종 안전 관련 보험(배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

마. (해당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자 보험은 소멸형으로 가입하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 경우 이용을 제한해야 함

• 안전교육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안전교육	이용자	횟수	연 1회	
		방법	(제공기관→이용자) 제공기관에서 자체 교육 실시 - 각종 재난 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 등 - 이동·청소년, 노인의 경우 비상·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비상연락 (부모 혹은 보호자 등 2인 이상)를 기록	
	제공자	횟수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방법	- 이수대상자: 사회서비스 제공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방법: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기관 자체교육 또는 외부 위탁교육 실시 * 인정되는 교육과정 : 중앙사회서비스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제주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수교육 시간과 중복으로 인정 * 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필수(보수교육 시간과는 중복 인정 불가)	

제주지원단 교육운영 안내

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교육 원칙

-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보수교육 안내

※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보건복지부 지침 및 지원단 홈페이지 연간 교육계획 참고

1) 이수시간 및 교육 운영기관

※ 사이버교육은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이수하는 과정을 의미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Zoom 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이 아닌 집합 교육에 해당)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보수교육	교육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기존	연 8시간		
	필수이수시간 신규	당해연도 기준 12시간 *교육구분에 따라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 필요 *신규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 제공한 날의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당해연도 기준 12시간 *교육구분에 따라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 필요 *신규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 제공한 날의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당해연도 기준 연 12시간 ※ 단,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공통교육 4시간 포함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u>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u> <u>서 요구되는 교육과는 별도로</u> 아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육구성 - ① 공통 교육 4시간 + ② 직무 교육 4시간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대면·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이수 위무시간의 1/20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등의 직무분야 교육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 직무교육 4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5년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명시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교육의 경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교육에 한해 인정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온라인·집합 교육과정 운영, 교육이수 안내 등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edu.kcpass.or.kr) 혹은, 17개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확인
			인정 가능한 교육과정 목록은 매년 지원단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보수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kcpass.or.kr/edu/>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
- 17개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2) 교육체계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분	교육내용
공통교육 (4시간)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 안전관리 예방(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 아동·노인 등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실무서류 작성
직무교육 (4시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 돌봄 서비스 운영 - 건강관리 지도 - 돌봄분야 발달지도 - 상담 및 교육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구분	교육내용
공통 교육 (4시간)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 안전관리 예방(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실무서류 작성
직무 교육 (4시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 • 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 신체활동지원 • 이동보조법 등 - 인지정서지원 • 인지력 향상 지원방법 등 - 가사활동지원 • 의복관리법 등 - 사회활동지원 • 지역사회정보 활용 등 - 건강지원 • 재활운동 보조방법 등 • 가족관계지원 • 보호자 교육법 등 • 일상생활 위험관리 • 위험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법 •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관리 • 활동일지 작성법 등 • 가사관리 컨설팅 • 가사관리 및 설계, 가사기본관리, 정리수납 등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상담 기본이론 및 기법 • 현장 클레임 대응법 • 방문 매너 이미지 메이킹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과정은 교육시간으로 인정

* 법정 교육(예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보건·안전교육 등

* 맞춤형 교육(예시) :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이용자 안전사고 유형 및 응급 대응법 등
-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등*의 직무분야 교육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 직무교육 4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등

※ 교육내용 : 교육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공통교육과 직무교육의 구분

- 공통교육 :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
- 직무교육 : 제공하는 대상과 분야별 기본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다. 일상돌봄서비스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공통교육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서비스 이용 대상의 이해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 안전관리 예방(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 성희롱, 성폭력 예방 -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실무서류 작성	4시간
직무교육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 (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 돌봄서비스 운영 - 위험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법 - 건강관리 지도 - 상담 및 교육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4시간

3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수 및 안전교육 신청안내

1) 교육신청 안내

①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http://www.jejuksi.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컨설팅▶교육신청

- 지원단 **회원가입 필수**, 미가입 시 **교육 신청 불가**

※ 회원가입 시 유형을 제공기관장의 경우 “기관”, 그 밖에는 “제공인력”으로 선택, 일반으로 선택할 경우 교육 신청 불가

-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공기관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
(입력 후 확인 필수,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육담당자에게 문의)
- 타인의 계정으로 교육을 신청할 경우 자동 취소 처리



②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대상 확정 안내(문자 발송)

- 교육 대상자 확정일은 각 교육 운영 계획 확인
- 교육 신청자(대기자 포함)는 해당일에 **개별적으로 신청 상태 확인 필수**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신청 ▶신청내용 ▶상태가 **[확정]**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나의 교육신청

교육명 검색



교육명	신청자	상태	등록일자	수강증 발급	신청내용	교육시간
(테스트) 사회서비스 제공자 보수교육	홍길동	확정	2023-01-19 10:18		신청내용	
총 교육시간 : 0일 0시간 0분						
⚠ 완료상태의 교육만 시간통계에 합산됩니다.						



③ 신청 상태가 “확정”으로 변경 및 신청인 인적사항 내 오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최종 확정



④ 교육 이수

2) 이수증 발급 안내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해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① 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 지각, 무단 이탈, 중도 퇴실 등으로 참여 시간 미달 시 충족 불가
(교육 시작 후 20분 이후부터 입장·입실 불가)
- ② 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참여: 교육 종료 후 기한 내 설문조사 참여
(교육 종료 후 문자로 수신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응답)



교육 종료 7일 이후부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http://www.jejucsi.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신청 ▶수강증 발급

나의 교육신청

교육명 검색 🔍

교육명	신청자	상태	등록일자	수강증 발급	신청내용	교육시간
(테스트) 사회서비스 제공자 보수교육	홍길동	완료	2023-01-19 10:08	발급	신청내용	02시간 00분
						총 교육시간 : 0일 2시간 0분

Ⓜ 완료상태의 교육만 시간통계에 합산됩니다.

3) 교육 이수 시 유의사항

- 교육 신청 없이 무단으로 교육 이수 불가 (지원단 회원가입 필수)
-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공기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교육 이수 인정 불가
- 타인의 계정으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 취소 처리
- 신청 기간 내 교육 취소는 가능하나 접수 마감 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

※ 교육 취소방법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신청 ▶신청내용 ▶상태: 신청 옆 [취소하기] 버튼 클릭 ▶취소사유 기재 후 [취소하기] 클릭

※ 참고화면

프로그램 신청서

상태	신청	취소사유 :	취소하기
프로그램명	(테스트) 사회서비스 제공자 보수교육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1234-5678	제공기관명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여를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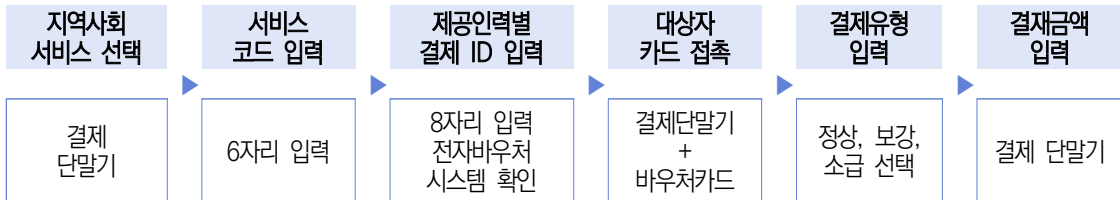
- 1) 교육 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무단 불참이 연 3회 이상인 제공자
- 2) 대리수강을 한 제공자 또는 대리수강을 의뢰한 제공자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안내

1 결제 원칙

1) 결제 방법

• 전용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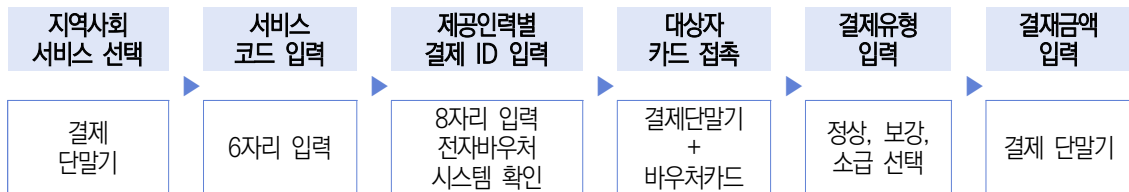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 출력 가능

• 스마트폰

- 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전용 단말기 사용중인 인력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해지 후 스마트폰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 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 통합관리(스마트폰 등록)



2) 기타 결제

소급결제	• (원칙)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이루어졌으나 아래의 사유로 당일 결제하지 못한 경우 한하여 인정
	[소급결제 인정 사유] 이용자 카드 발급 지연 이용자 바우처 카드 분실 · 훼손 단말기 분실 · 고장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 (소급결제 가능 시기)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서비스 제공 월의 익월(다음 월)까지 결제가능 ※ 이용자 카드 단순 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서비스 당일(22시)까지만 가능 • (소급결제 방법) 단말기 결제시 결제유형을 "소급결제"로 선택 후 결제
보강결제	• (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ex. 3월에 서비스를 제공을 못한 경우 4월까지 보강 및 결제 가능) • 12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에 보강할 수 없음(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 불가) • (결제방법) 단말기 결제 시 결제유형을 "보강결제"로 선택 후 결제 • 하루에 최대 정상결제 1회, 보강결제 1회 가능(하루에 2회 연속 보강결제 불가) • (결제 효력 발생)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일부터 효력 발생 → 계약 이전 보강결제 불가 단, 계약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제공기관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의 승인 받아 서비스 계약 전 남아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사용 가능

3) 유의사항

-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소급결제 및 보강을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기록지”에 유형 선택 후 사유 작성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월 말일 24시 이후 잔여 바우처 전량이 소멸되므로 보강을 하더라도 결제 불가

2 부정수급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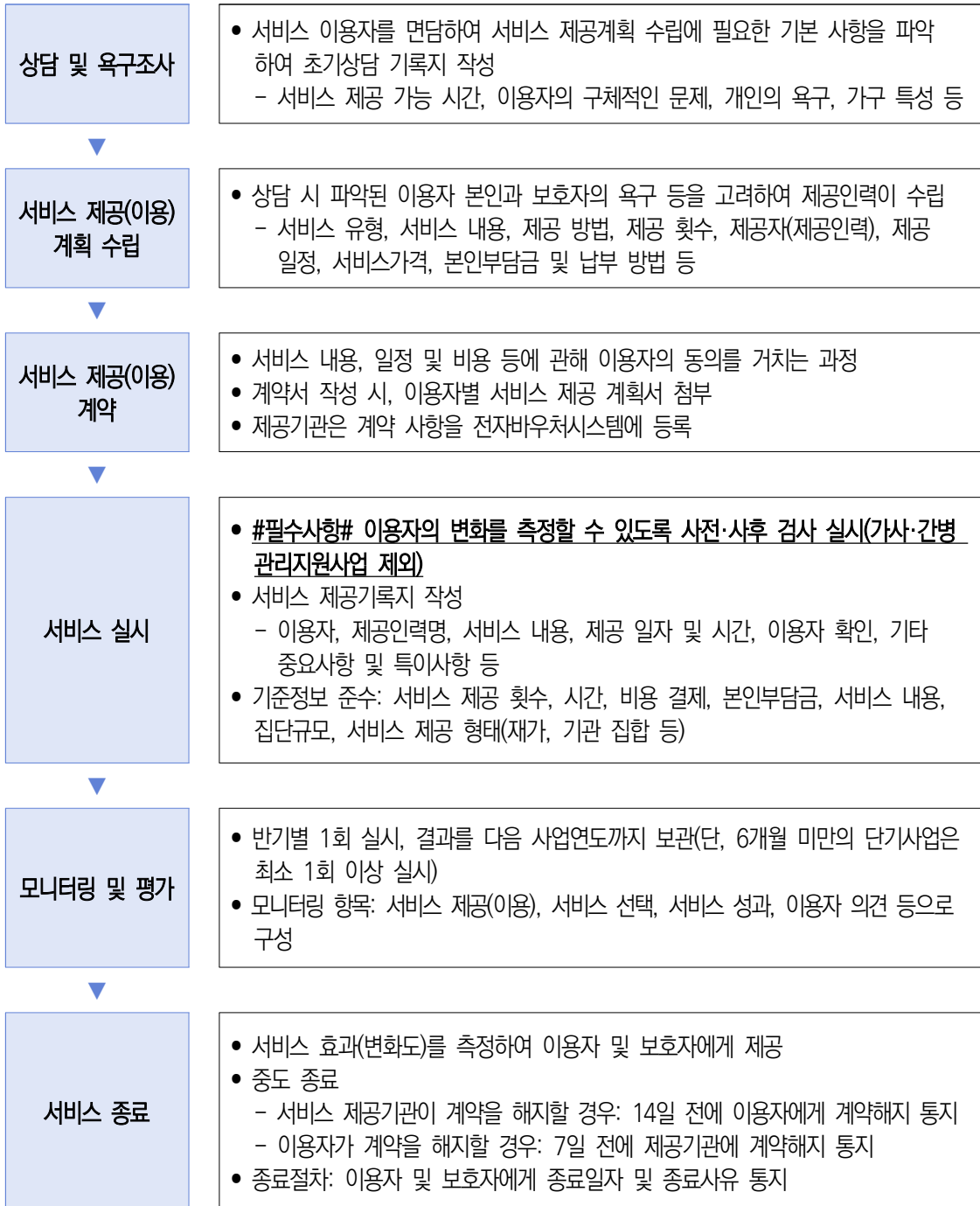
유형	주요 내용
해외출국	• 제공인력 및 이용자가 해외출국 기간 내 결제하는 행위
사망의심	• 제공인력 및 이용자 중 사망 또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하는 행위
장기요양 이용·제공자	• 바우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이용·제공하는 행위
장기 입원자	• 이용자가 병원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후 결제하는 행위
제공인력	• 제공인력의 병원 입원기간 중 결제하는 행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행위
일괄결제	•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동시간 대에 다수의 서비스 결제하는 행위
중복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간에 타 서비스 비용 결제하는 행위
심야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심야시간에 결제하는 행위
연속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간 간에 차이 없이 연속하여 결제하는 행위
선 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격위반	• 대상 연령을 초과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은 행위
서비스 단가위반	• 복수 할인단가 원칙을 위반해 1인 단가로 결제하는 행위
동일단가 외 결제	• 신고한 서비스 단가를 위반하여 결제하는 행위
학교수업시간 중 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학교수업시간에 결제하는 행위
제공인력 자격위반	• 제공인력이 자격 없이 서비스 제공하는 행위
휴일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적은 휴일에 결제하는 행위
미제공(미이용) 서비스비용 결제	•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 양도 또는 매매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취득한 바우처로 결제하는 행위
담합	• 이용자와 제공기관(또는 제공인력)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제공기관(제공인력)의 바우처카드 보유	• 제공기관(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
타 제공인력 ID 사용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타 제공인력의 ID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구분	조치사항
제공자의 바우처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및 기관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록취소 등 처분 •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함
이용자의 바우처 부정수급	• 바우처의 잔여기간 동안 사용 중지 처리 및 차후 이용자 선정 시 배제 • 특히, 제공기관장 또는 제공인력 등과 담합하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서비스 제공 안내

1 서비스 제공 안내

1) 서비스 제공 절차



2)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안내

• 주요 계약 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계약효력 정지 및 취소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쌍방간 부당·부정 시 계약 취소(바우처 지원 중단)

•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계약서는 '제36호 서식' 참고
- 서비스 제공계약서의 서명은 이용자 본인 서명 원칙임. 본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서명으로 대체
-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3) 서비스 실시

가) 서비스 실시

-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실시 (가사·간병관리지원사업 제외)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
(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
※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로 사전검사를 갈음(별도의 바우처 결제 불가)

나)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서비스제공 후 관련 내용은 서비스 제공 기록지(제00호 서식)에 자필 기록
- 제공 기록지 작성 시 필수사항
① 이용자명 ② 생년월일 ③ 제공인력명 ④ 서비스내용 ⑤ 서비스제공일시
⑥ 이용자 및 제공인력 서명
- 지체 장애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지장), 보호자 서명 가능
-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이사항 등 기재 가능

4)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보강 및 소급 결제를 해야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변경 후 서비스 보강 및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예시1. 같은 월에 제공기관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월의 바우처 잔액은 변경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 전월의 바우처 잔액(보강)은 불가

예시2. 8월에 제공기관 변경을 할 경우, 기존 제공기관의 7월 잔여 서비스(보강) 및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상담 후 7일 이내에 제공인력 변경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게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 후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제공인력 변경 시 변경계약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필수 작성

● **서비스 일정 변경**

-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일정(요일,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나 서비스 제공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이용자 및 제공기관 사정에 의해 일시적(일회성)으로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제공기록지에 하단 비고(종합의견)란에 작성

정리

- 제공인력 변경,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변경 시 변경계약서와 서비스 제공계획서 필수 작성
- 서비스 일정 변경 시 변경계약서만 작성

구분	변경항목	관리방법
일시적 변경 사항 (단발성, 1회성)	제공일정(요일, 시간), 제공인력 변경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해당내용 기재
일시적이지 않은 변경사항 (계속변경)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등 변경	변경계약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재작성
	제공일정(요일, 시간) 변경	변경계약서 작성

5)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 까지 보관
- ※ 6개월 미만 단기사업은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관련 구비서류 : 모니터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응답 증빙자료

2025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 변경사항 적용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이용자부터 적용

사 업 명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서비스 (010117)	기준 가격	1등급: 162,000 2등급: 144,000 3등급: 126,000 4등급: 0 부적합: 0	1등급: 162,000 2등급: 144,000 3등급: 126,000 4등급: 36,000 부적합: 0
	정부지원금	1등급: 162,000 2등급: 144,000 3등급: 126,000 4등급: 0 부적합: 0	1등급: 162,000 2등급: 144,000 3등급: 126,000 4등급: 36,000 부적합: 0
	본인부담금	1등급: 18,000 2등급: 36,000 3등급: 54,000 4등급: 180,000 부적합: 0	1등급: 18,000 2등급: 36,000 3등급: 54,000 4등급: 144,000 부적합: 0
아동청소년비전 형성 서비스 (130117)	서비스시간	1. 기본형 60분 ※ 읍·면 도서지역(90분) 2. 체험통합형: 기본형(120분), 체험 300분	1. 기본형 60분 ※ 읍·면 도서지역(90분) 2. 체험통합형: 기본형(90분), 체험 240분
아동청소년음악 멘토링서비스 (290117)	서비스내용	○ 음악 멘토링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작곡 등): 월6회(주1~2회), 회당 60분 * 읍면지역: 월4회(주1회), 회당90분 ○ 아래 3가지 중 선택 1 : 연2회(반기별1회,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미포함) 1. 방문음악회(취약시설, 도서관, 마을회관 등) 2. 초청 음악회, 향상음악회, 합동공연 3. 공연관람, 음악 강연 관람 등 * 향상음악회: 제공기관 자체 공간 활용 가능, 2인 이상 연주하는 경우를 의미함. * 1,2,3에 대한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 증빙자료 구비(사진, 공연표, 참가자 서명 등 증빙)	○ 음악 멘토링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작곡 등): 월6회(주1~2회), 회당 60분 * 읍면지역: 월4회(주1회), 회당90분 ○ 아래 3가지 중 선택 1 : 연2회(반기별1회,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미포함) 1. 방문음악회(취약시설, 도서관, 마을회관 등) 2. 초청 음악회, 향상음악회, 합동공연 3. 공연관람, 음악 강연 관람 등 * 향상음악회: 제공기관 자체 공간 활용 가능, 2인 이상 연주하는 경우를 의미함. * 1,2,3에 대한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 증빙자료 구비(사진, 공연표, 참가자 서명 등 증빙)

사 업 명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 악기 무상임대(기관사정에 따라 다름, 악기 특성상 운반의 어려움으로 악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예, 피아노, 드럼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기관방문 서비스 이용 허용)	* 악기 무상임대(기관사정에 따라 다름, 악기 특성상 운반의 어려움으로 악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예, 피아노, 드럼 등)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인 1등급 대상자에 한정하여 기관방문 서비스 이용 허용, 2등급 대상자는 가정방문이 필수이며 학원·교습소 등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
	자격기준	○ 관련악기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악기범위: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 악기분류 범주 내의 유사 악기 서비스 제공 가능 ○ 관련음악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음악범위: 성악, 작곡 ※ 전공악기 증빙 필수-졸업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 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원·교습소 등의 장은 제 공인력으로 등록 불가 1.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 악기분류 범주 내의 유사 악기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성악, 작곡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졸업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 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060인생예찬! 장년층음악 정서지원서비스 (990817)	기준가액	1등급: 189,000 2등급: 168,000 3등급: 147,000 4등급: 126,000 5등급: 0 부적합: 0	1등급: 189,000 2등급: 168,000 3등급: 147,000 4등급: 126,000 5등급: 42,000 부적합: 0
	정부지원금	1등급: 189,000 2등급: 168,000 3등급: 147,000 4등급: 126,000 5등급: 0 부적합: 0	1등급: 189,000 2등급: 168,000 3등급: 147,000 4등급: 126,000 5등급: 42,000 부적합: 0
	본인부담금	1등급: 21,000 2등급: 42,000 3등급: 63,000 4등급: 84,000 5등급: 210,000 부적합: 0	1등급: 21,000 2등급: 42,000 3등급: 63,000 4등급: 84,000 5등급: 168,000 부적합: 0

사 업 명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제공주기	1. 상담:이용기간 내 2회 2. 서비스이용: 음악이론 및 실기 월6회 3. 정서지원프로그램 월1회 4. 악기공연(합주회) 이용기간 내1회	1. 상담:이용기간 내 2회 2. 서비스이용: 음악이론 및 실기 월4회 3. 정서지원프로그램 월1회 4. 악기공연(합주회) 이용기간 내1회																
	서비스시간	50분	1. 상담: 50분 2. 음악이론 및 실기: 60분 3. 정서지원프로그램: 50분 4. 악기공연: 50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 기준 (가족돌봄 청(소)년 연령기준)	13세~39세	9세~39세																
	지원대상자 기준 (연령기준 적용방식)	연나이제(출생연도)	만나이제																
	B-1유형 삭제 (가사만 12시간)	A형(돌봄+가사/36시간) C형(돌봄+가사/72시간) B-1형(가사/12시간) B-2형(가사/24시간)	A형(돌봄+가사/36시간) C형(돌봄+가사/72시간) B형(가사/24시간)																
	바우처 총액 (돌봄·가사 월36시간 (A형))	648,000원	660,000원																
	본인부담금 (돌봄·가사 월36시간 (A형))	<table> <tr> <th>수급자, 차상위</th> <th>면 제</th> </tr> <tr> <td>120% 이하</td> <td>(10%) 64,800원</td> </tr> <tr> <td>120~160%</td> <td>(20%) 129,6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648,000원</td> </tr> </table>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0% 이하	(10%) 64,800원	120~160%	(20%) 129,6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table> <tr> <th>수급자, 차상위</th> <th>면 제</th> </tr> <tr> <td>120% 이하</td> <td>(10%) 43,200원</td> </tr> <tr> <td>120~160%</td> <td>(25%) 108,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432,000원</td> </tr> </table>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0% 이하	(10%) 43,200원	120~160%	(25%) 108,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0% 이하	(10%) 64,800원																		
120~160%	(20%) 129,6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0% 이하	(10%) 43,200원																		
120~160%	(25%) 108,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바우처 총액 (돌봄·가사 월72시간 (C형))	1,286,000원	1,320,000원																	

사 업 명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본인부담금 (돌봄·가사 월72시간 (C형))	수급자, 차상위	면 제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0% 이하	(10%) 129,6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20~160%	(20%) 259,200원	120~160%	(25%) 330,0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본인부담금 (가사만 월 24시간 (B형))	수급자, 차상위	면 제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0% 이하	(10%) 43,200원	120% 이하	(10%) 43,200원
		120~160%	(20%) 86,400원	120~160%	(25%) 108,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서비스 세분화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식사관리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식사관리 영양관리 바우처총액	식사영양관리서비스 257,000원		식사관리 228,000원 영양관리 260,000원	
식사관리 영양관리 본인부담금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120% 이하 (20%) 51,400원 120~160% (30%) 77,1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식사관리서비스〉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20~160%	(30%) 68,400원		
		160% 초과	(100%) 228,000원		
		〈영양관리서비스〉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120~160%	(30%) 78,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병원동행 서비스 가격인상	시간당 1.5만원		시간당 1.7만원		

서비스 제공 서식

[제37호 서식]

서비스제공 기록지(월)

제공기관명 :

20 . . . ~ 20 . . .

○ 이용자 성명		○ 생년월일		○ 제공인력	
제공횟수 (월/일) (시작/종료)	제공 장소	서비스 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서명
1회차 (/) (:) (:)		1. - 2. - 3. -			*정자서명 ex: 홍길동
2회차 (/) (:) (:)		1. - 2. - 3. -			
3회차 (/) (:) (:)		1. - 2. - 3. -			
4회차 (/) (:) (:)		1. - 2. - 3. -			
5회차 (/) (:) (:)		1. - 2. - 3. -			
비 고 (종합의견)					
1. 소급결제 및 보강결제 시 날짜 표기(서비스 원래 제공일 → 결제일, ex: 3/25 → 4/3)하고 사유 작성 - 소급결제 사유 내용(카드발급 지연, 카드분실 훼손, 단말기 분실·고장, 단말기 미수령 등) - 보강결제 사유 내용(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합의하에 따른 보강내용) 2. 서비스제공 일정 변경 등 일시적 변경은 제공기록지 기록(계속변경은 “변경계약서와 서비스 제공계획서” 첨부) 3. 필수 기입사항: 이용자 변화, 요구사항, 건강상태, 서비스 제공 관련, 제공인력 조치사항 등 기록 ※ 비교란에 보강 등 일정변경 사항 및 결제 관련 특이사항은 해당 시 기록해야 하며, <u>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 변화 및 욕구사항 등 총평은 매월 마지막 주 비교란에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함.</u>					

※ 단, 서비스 제공인력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월 1회 서명 가능(비고(종합의견)란 활용). 시각장애인 제공인력의 서명은 서명, 도장, 무인 중 택 1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영유아·아동·청소년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4.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6.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서비스

- 가족

7. 영유아가족예술지원서비스

- 장애인

8. 음악재활힐링서비스

- 성인

9.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10. 성인건강코칭서비스
11. 5060인생예찬! 장년층음악정서지원서비스

- 노인

12. 건강나눔안마서비스
13.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 청년

14.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청년취업단 수행 사업으로 서비스 진행 여부 3월 중 확정 예정)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3. 일상돌봄서비스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020117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중복 불가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육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td><td>만0세 ~ 만6세 이하 영유아 (출생연도 기준)</td><td>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②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DEP, K-ASQ 등)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0세 ~ 만6세 이하 영유아 (출생연도 기준)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②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DEP, K-ASQ 등)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0세 ~ 만6세 이하 영유아 (출생연도 기준)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②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DEP, K-ASQ 등)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우선순위 : ① 의사진단서 제출자 ② 높은 연령순										
제출서류	<table><tr><th>육구기준 번호</th><td>※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td></tr><tr><td>①</td><td>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td></tr><tr><td>②</td><td>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 해당 영유아가 재원 중이거나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아교육기관의 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 6개월 이내 발급한 추천서, 검사결과지 ※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td></tr><tr><td>③</td><td>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td></tr></table>			육구기준 번호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②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 해당 영유아가 재원 중이거나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아교육기관의 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 6개월 이내 발급한 추천서, 검사결과지 ※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육구기준 번호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②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 해당 영유아가 재원 중이거나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아교육기관의 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 6개월 이내 발급한 추천서, 검사결과지 ※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 또는 1:3 이하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table><tr><th>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r><td>○ 기본서비스 가. 발달기초 영역(1:1)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1:1) 나. 언어발달 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1:1)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1:1)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1:3 이하)</td><td>월 5회 (주1~2회)</td><td>회당 50분</td></tr></table>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기본서비스 가. 발달기초 영역(1:1)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1:1) 나. 언어발달 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1:1)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1:1)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1:3 이하)	월 5회 (주1~2회)	회당 50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기본서비스 가. 발달기초 영역(1:1)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1:1) 나. 언어발달 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1:1)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1:1)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1:3 이하)	월 5회 (주1~2회)	회당 50분									

항 목	내 용																																		
	<table><tr><th>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r><td>다. 초기 인지영역(1:1)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1:1) 라. 정서·사회성영역(1:3 이하)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1:3 이하)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1:3 이하) * 1:3 이하 서비스는 발달지원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하여 부모(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 상담을 거쳐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가능하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 별도 적용</td><td></td><td></td></tr><tr><td>○ 기타서비스 - 부모 상담 및 교육(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 월별 보고서 작성 배포</td><td>월 1회 월 1회</td><td></td></tr></table>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다. 초기 인지영역(1:1)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1:1) 라. 정서·사회성영역(1:3 이하)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1:3 이하)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1:3 이하) * 1:3 이하 서비스는 발달지원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하여 부모(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 상담을 거쳐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가능하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 별도 적용			○ 기타서비스 - 부모 상담 및 교육(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 월별 보고서 작성 배포	월 1회 월 1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다. 초기 인지영역(1:1)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1:1) 라. 정서·사회성영역(1:3 이하)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1:3 이하)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1:3 이하) * 1:3 이하 서비스는 발달지원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하여 부모(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 상담을 거쳐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가능하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 별도 적용																																			
○ 기타서비스 - 부모 상담 및 교육(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 월별 보고서 작성 배포	월 1회 월 1회																																		
서비스 가격	○ 1:1인 서비스 기준 월 240,000원																																		
	○ 회별 서비스 단가																																		
	<table><tr><th>집단규모</th><th>집단서비스 단가(회당 서비스 단가)</th><th>회차별 단가(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th></tr><tr><td>1:1인</td><td>개별서비스단가의 100%×1인=100%</td><td>48,000원</td></tr><tr><td>1:2인</td><td>개별서비스단가의 70%×2인=140%</td><td>33,600원</td></tr><tr><td>1:3인</td><td>개별서비스단가의 50%×3인=150%</td><td>24,000원</td></tr></table>			집단규모	집단서비스 단가(회당 서비스 단가)	회차별 단가(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1인	개별서비스단가의 100%×1인=100%	48,000원	1:2인	개별서비스단가의 70%×2인=140%	33,600원	1:3인	개별서비스단가의 50%×3인=150%	24,000원																				
	집단규모	집단서비스 단가(회당 서비스 단가)	회차별 단가(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1인	개별서비스단가의 100%×1인=100%	48,000원																																
	1:2인	개별서비스단가의 70%×2인=140%	33,600원																																
	1:3인	개별서비스단가의 50%×3인=150%	24,000원																																
	* 집단규모 1:2, 1:3 이하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 바우처 잔량이 발생하게 되므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이용자(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및 충분한 협의 필요																																		
	○ 회당 환급금액																																		
	<table><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d rowspan="2">회별 단가 (1:1)</td><td>정부지원금</td><td>43,200원</td><td>38,400원</td><td>33,600원</td></tr><tr><td>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td><td>4,800원</td><td>9,600원</td><td>14,400원</td></tr><tr><td rowspan="2">회별 단가 (1:2)</td><td>정부지원금</td><td>30,240원</td><td>26,880원</td><td>23,520원</td></tr><tr><td>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td><td>3,360원</td><td>6,720원</td><td>10,080원</td></tr><tr><td rowspan="2">회별 단가 (1:3)</td><td>정부지원금</td><td>21,600원</td><td>19,200원</td><td>16,370원*</td></tr><tr><td>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td><td>2,400원</td><td>4,800원</td><td>7,630원</td></tr></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회별 단가 (1:1)	정부지원금	43,200원	38,400원	33,6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4,800원	9,600원	14,400원	회별 단가 (1:2)	정부지원금	30,240원	26,880원	23,52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3,360원	6,720원	10,080원	회별 단가 (1:3)	정부지원금	21,600원	19,200원	16,37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2,400원	4,800원	7,63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회별 단가 (1:1)	정부지원금	43,200원	38,400원	33,6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4,800원	9,600원	14,400원																														
	회별 단가 (1:2)	정부지원금	30,240원	26,880원	23,52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3,360원	6,720원	10,080원																														
회별 단가 (1:3)	정부지원금	21,600원	19,200원	16,37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2,400원	4,800원	7,630원																															
* 전자바우처 결제의 계산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원 단위 이하 절상																																			

항 목	내 용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문제개선 및 영유아 발달 지원	① 언어능력 발달 측정 : SELSI, P-FA, REVT, PRES,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U-TAP, APAC 등 ② 인지능력 발달 측정 : K-CDI, Denver II, K-ASQ, K-DST 등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추가 서비스 구매액	추가 혹은 일반 매출액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72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010117		
목적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중복 불가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행복이음에서 확인)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소득기준 없음	○ 만3세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출생연도 기준 * 단, 23년 하반기 기준정보 변경 이전 만 0세 ~ 만 2세 이용자들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만 포함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높은 연령			
제출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가지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만 포함 ○ 진단서 등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한정한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의 진단이나 소견 •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 초·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전문상담교사,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추천서 + 검사결과지: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 검사결과지 리스트는 『25년 보건복지부 지침 p.288-296』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 : 1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필수), 재가방문형(행정시 승인)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신청 1회 가능)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공(40분) - 언어, 놀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상담 프로그램 • 부모상담 : 대면 또는 유선 상담(10분) ※ 세부프로그램 내용은 기관별 상이 ※ 제공기록지(일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월 4회 (주 1회)	회당 50분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월 18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3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144,000원
	○ 회당 환급금액 (월 4회 결제)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40,500원	36,000원	31,500원	9,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4,500원	9,000원	13,500원	36,000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문제행동 감소 및 발달 지원	① 언어능력 발달 측정: SELSI, P-FA, REVT, PRES,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U-TAP, APAC 등 ② 인지능력 발달 측정 : K-CDI, Denver II, K-ASQ, K-DST 등 ③ 심리·정서·행동 발달 측정 : MMPI-A, LCSi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검사, TCI, SCT, HTP, K-CBCL, K-CYP, SMS, K-PRC 등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추가 서비스 구매액	추가 혹은 일반 매출액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참고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290117								
목적	경제사정 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악기다루기, 음악공연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 이고 밝은 심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육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td><td>만 7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td><td>-</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	-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	-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높은 연령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 • 제공방식 : 가정방문(필수)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음악 멘토링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작곡 등)		월 6회 (주 1~2회)	회당 60분					
	• 읍·면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월 4회 (주 1회)	회당 90분					
	• 아래 3가지 중 선택 - 방문음악회(취약시설, 도서관, 마을회관 등) - 초청 음악회, 향상 음악회, 합동 공연 - 공연관람, 음악 강연 관람 등 ※ 향상음악회: 제공기관 자체 공간 활용 가능, 2인 이상 연주하는 경우를 의미함. ※ 1,2,3에 대한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 증빙자료 구비(사진, 공연표, 참가자 서명 등 증빙) ※ 제공기록지(일지) 작성 필수, 결제미포함		연 2회 (반기별 1회)	-					
	• 악기 무상임대(기관사정에 따라 다름, 악기 특성상 운반의 어려움으로 악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예: 피아노, 드럼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 위계층인 1등급 대상자에 한정하여 기관방문 서비스 이용 허용, 2등급 대상자는 가정방문이 필수이며 학원·교습소 등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		1년						
서비스 가격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항 목	내 용		
	○ 회당 환급금액 (월 6회 결제 / 읍·면·도서지역의 경우 월 4회 결제)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동 지역	30,000원	1~5회기 26,600원
			6회기 26,700원
		1~5회기 3,330원	1~5회기 6,660원
		6회기 3,350원	6회기 6,770원
	읍·면지역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5,000원	10,000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심리정서 안정 및 자아존중감 향상		성취동기 검사, 자아존중감(RSE), 자기유능감, 자기표현 척도 등
	연주능력 향상		악보를 읽고 간단한 곡 연주 능력 측정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다만 학원, 교습소 등의 장은 제공 인력으로 등록 불가		
	-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 악기 분류 범주 내의 유사 악기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성악, 작곡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졸업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성적증명서, 졸업 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160117		
목적	경도이상 비만 및 저체중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지원		
중복 불가 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추후 부정수급 등 확인 시 지원 금액 환수 조치)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	만 5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따라 체질량 지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 ① 체질량 지수 초과 정도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체질량지수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음의 구비서류 중 택1 ※ 체질량지수(BMI)가 없는 경우 키와 몸무게가 기재된 결과지 •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 상황 결과통보지 •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 •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 • 읍면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체성분 검사 결과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 : 15인 (집단 규모 초과시 추가제공인력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제공방식 :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반드시 2개 이상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 제공) ※ 필요시 추가 확보시설 등록 가능(행정시 승인 사항)	월 8회 (주 2회)	회당 50분
	• 읍·면지역 또는 체육시설(수영, 테니스, 축구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월 4회 (주 1회)	회당 100분
	• 기관방문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월 6회 (주 1~2회)	기관방문 50분 체육시설 100분
	•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미포함 - 건강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음식 조절, 식단구성 등), 설문조사 및 상담(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증진행동 등)	분기 1회	
	•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미포함	필요시	

항 목

내 용

월 12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12,000원	24,000원	36,000원	48,000원

○ 회당 환급금액(월 8회)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3,500원	12,000원	10,500원	9,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1,500원	3,000원	4,500원	6,000원

서비스 가격

○ 회당 환급금액(월 6회) *기관방문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8,000원	16,000원	14,000원	12,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 회당 환급금액(월 4회) *읍·면지역 또는 체육시설(수영, 테니스, 축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시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27,000원	24,000원	21,000원	18,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3,000원	6,000원	9,000원	12,000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비만 및 저체중 개선, 건강관리 능력 향상	BMI(체질량지수), 청소년 체력검사(CRT), 신체적 자기 효능감 등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추가 서비스 구매액	추가 혹은 일반 매출액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항 목	내 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체육정교사, 건강운동관리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② 건강교육 및 영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학교 정교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간호사 •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체육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기준 (추가사항)	• 외부 체육시설(수영, 테니스, 축구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는 보조교사 1명 추가 배치 권고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130117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욕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td><td>만 7세 ~ 만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td><td>-</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 ~ 만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	-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 ~ 만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출생연도 기준)	-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높은 연령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2인 (집단 규모 초과시 추가제공인력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체험활동 및 읍·면·도서지역 서비스 제공에 한정) ※ 필요시 추가 확보시설 등록 가능(행정시 승인 사항)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table><tr><th colspan="2">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able>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기본형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제공		월 6회 (주 1~2회)	회당 60분					
		• 읍·면·도서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월 4회 (주 1회)	회당 90분					
		• 부모상담 및 교육 ※ 제공기록지(일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월 1회						
	체험 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		월 3회 (주 1회)	회당 90분					
• 사회, 과학, 직업체험 ※ 단일 제공 기관 내에서 동일한 제공인력이 각각의 집단에 대해 외부체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합반하여 진행 가능.		월 1회	회당 240분							

증빙서류	- 야외활동 시 차량보험가입 - 체험활동 시 여행자 보험(소멸형) 가입 - 보호자 동의(체험, 야외활동 시)			
서비스 가격	월 16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항 목	내 용			
	○ 회당 환급금액 *기본형 월 6회, 읍·면·도서지역 월 4회, 체험통합형 월 4회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기본형 (월 6회)		
	정부지원금	24,000원	1~5회기 21,330원	1~5회기 18,660원
			6회기 21,350원	6회기 18,7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1~5회기 2,660원	1~5회기 5,330원	8,000원
		6회기 2,700원	6회기 5,350원	
	구분	체험통합형 / 읍·면·도서지역		
정부지원금	36,000원	32,000원	28,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액)	4,000원	8,000원	12,000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자존감, 진로성숙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 성취동기 검사, 진로 준비, 진로 성숙도 검사 등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 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 기준 (추가사항)	※ 단일 제공 기관 내에서 동일한 제공인력이 각각의 집단에 대해 외부체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합반하여 진행 가능. 단, 이 경우 반드시 보조인력 1명 이상 배치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990117											
목적	출산 및 영유아용품 대여(교환)를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육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td><td>만 0세 ~ 만 5세 이하 영유아(출생연도 기준)</td><td>-</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0세 ~ 만 5세 이하 영유아(출생연도 기준)	-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0세 ~ 만 5세 이하 영유아(출생연도 기준)	-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높은 연령순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3회 가능)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 출산 및 영유아 용품 대여(교재 및 교구 포함) • 발달단계별 놀이지도 교육 및 상담			월 1회								
서비스 가격	월 42,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이하)							
	정부지원금	38,400원	36,000원	33,600원	31,000원							
	본인부담금	3,600원	6,000원	8,400원	11,000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용품 대여를 통한 이용자 만족감 향상		용품 대여 이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사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추가 혹은 일반 매출액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및 유치원 정교사 • 영유아 및 보육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 족

영유아가족예술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180117			
목적	만 2세 ~ 만 5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양육지원을 도모하며 부모교육의 기회 제공과 함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및 가족관계 강화에 기여			
중복 불가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2세 이상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의 부모(출생연도 기준)	-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다자녀(5인→4인→3인→2인) ③ 저연령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0 (부모 1인에 영유아 2명 참여 가능, 부 또는 모 참석 필수) ※ 집단 규모 초과시 추가제공인력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체험활동 및 읍·면·도서지역 서비스 제공에 한함)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불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예술교육 및 가족정서지원 프로그램(월 5회) - 예술교육 : 예술자체의 창작과 감상 그리고 예술정신이나 기법이 활용되는 모든 교육(월 2회 이상 필수제공) - 가족정서지원 : 가족 간 다양한 정서 확립 및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월 2회 이상 필수제공)		월 5회 (주 1~2회)	회당 60분
• 읍·면·도서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월 4회 (주 1회)	회당 75분	
• 부모교육 세미나(부모상담필수) *보고서 등 서면으로 대체 불가 - MBTI, MMPI, 부모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문장완성 ※ 제공기록지(일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분기 1회	회당 90분	
서비스 가격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항 목	내 용															
	○ 회당 환급금액 *동지역 월 5회, 읍·면지역 월 4회															
	월 200,000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h colspan="3">동지역 (월 5회)</th></tr><tr><td>정부지원금</td><td>36,000원</td><td>32,000원</td><td>28,000원</td></tr><tr><td>본인부담금 (회당환급금)</td><td>4,000원</td><td>8,000원</td><td>12,000원</td></tr></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동지역 (월 5회)			정부지원금	36,000원	32,000원	28,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금)	4,000원	8,000원	12,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동지역 (월 5회)														
	정부지원금	36,000원	32,000원	28,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금)	4,000원	8,000원	12,000원												
	○ 회당 환급금액															
	월 200,000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h colspan="3">읍·면 지역(월 4회)</th></tr><tr><td>정부지원금</td><td>45,000원</td><td>40,000원</td><td>35,000원</td></tr><tr><td>본인부담금 (회당환급금)</td><td>5,000원</td><td>10,000원</td><td>15,000원</td></tr></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읍·면 지역(월 4회)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읍·면 지역(월 4회)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회당환급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사업 성과지표	<table><tr><th>성과지표</th><th>측정방법</th></tr><tr><td>양육스트레스 경감, 가족관계 강화</td><td>부모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 등</td></tr><tr><td>서비스 이용자 만족도</td><td>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td></tr></table>	성과지표	측정방법	양육스트레스 경감, 가족관계 강화	부모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 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									
	성과지표	측정방법														
	양육스트레스 경감, 가족관계 강화	부모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 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제공인력 자격기준	○ 예술교육: 예술(음악, 악기, 무용, 회화, 조소, 건축, 사진, 문학, 연극, 영화, 전통예술 등) 또는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족정서지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

음악재활힐링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200117			
목적	예술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음악교육 및 체험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견, 육성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소득기준 없음	만 6세 이상 모든 장애인(출생연도 기준)	-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중증 장애인 ③ 고연령순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인, 1:2~3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재신청 3회 가능)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악기(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등) 또는 성악 교육	기관방문: 월 4회(주1회) 재가방문: 월 4회(주1회)	1:1 (회당 60분) 1:2~3 (회당 90분)	
	• 공연장 방문 관람 또는 자체 연주회 개최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연 1회	회당 90분	
	• 악기 무상임대(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	1년		
서비스 가격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 회당 환급금액 * 월 4회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항 목	내 용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회적응력 및 삶의 질 향상	성취동기 검사, 자아존중감(RSE), 자기유능감 척도, 자기표현 척도, 사회성 척도 등
	연주능력 향상	악보를 읽고 간단한 곡 연주 능력 측정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조사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관련악기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에서 음악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획득한 자 - 평생교육원 등에서 음악재활(심리 또는 상담), 장애인음악지도사 과정 또는 유사 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인재활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교사자격증 보유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보유자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성 인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990417								
목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중복 불가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욕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td><td>만 19세 이상의 성인(출생연도 기준)</td><td>A형: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가능자 B형: 뇌손상 이후 회복기간 (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19세 이상의 성인(출생연도 기준)	A형: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가능자 B형: 뇌손상 이후 회복기간 (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19세 이상의 성인(출생연도 기준)	A형: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가능자 B형: 뇌손상 이후 회복기간 (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A형〉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읍, 면,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③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④ 낮은 연령순 〈B형〉 ① 기초수급자, 차상위 ② 높은 연령순								
제출서류	〈A형〉								
	다음의 구비서류 중 택 1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검사결과지의 검사는 사업 성과지표 - 측정방법 활용								
	〈B형〉								
	*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아래 4가지 중 택 1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사업 성과지표상 측정방법 활용한 검사)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 (개별상담 원칙) • 제공방식 : A형-기관방문형, B형-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휠체어이용자에 한함)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항 목	내 용																		
	〈A형〉 <table><tr><th>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r><td> • 사전·사후 검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사전검사: 시작 1개월 이내 1회 / 사후검사: 종결 월 1회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 (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 </td><td>연 2회</td><td>60분 이상</td></tr><tr><td> • 상담서비스(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필요시 월 1회 가족상담 가능 </td><td>월 4회 (주 1회)</td><td>회당 60분</td></tr></table> 〈B형〉 <table><tr><th>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r><td>- 성인 대상 언어, 인지, 음악, 미술 프로그램 중 택 1</td><td>기관방문 월 6회(주1~2회) 재가방문 월 4회(주1회)</td><td>회당 50분</td></tr><tr><td>- 가족상담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td><td colspan="2">10분</td></tr></table>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사전·사후 검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사전검사: 시작 1개월 이내 1회 / 사후검사: 종결 월 1회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 (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	연 2회	60분 이상	• 상담서비스(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필요시 월 1회 가족상담 가능	월 4회 (주 1회)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성인 대상 언어, 인지, 음악, 미술 프로그램 중 택 1	기관방문 월 6회(주1~2회) 재가방문 월 4회(주1회)	회당 50분	- 가족상담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10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사전·사후 검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사전검사: 시작 1개월 이내 1회 / 사후검사: 종결 월 1회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 (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	연 2회	60분 이상																
	• 상담서비스(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필요시 월 1회 가족상담 가능	월 4회 (주 1회)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성인 대상 언어, 인지, 음악, 미술 프로그램 중 택 1	기관방문 월 6회(주1~2회) 재가방문 월 4회(주1회)	회당 50분																	
- 가족상담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10분																		
서비스 가격	<table><tr><th colspan="4">월 200,000원</th></tr><tr><th>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d>정부지원금</td><td>180,000원</td><td>160,000원</td><td>140,000원</td></tr><tr><td>본인부담금</td><td>20,000원</td><td>40,000원</td><td>60,000원</td></tr></table>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 회당 환급금액(A형)																			
	<table><tr><th colspan="4">월 200,000원</th></tr><tr><th>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d>정부지원금</td><td>45,000원</td><td>40,000원</td><td>35,000원</td></tr><tr><td>본인부담금</td><td>5,000원</td><td>10,000원</td><td>15,000원</td></tr></table>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항 목	내 용																			
	○ 회당 환급금액(B형) 기관방문(월 6회 결제)																			
	월 200,000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h colspan="3">기관방문(월 6회)</th></tr><tr><td rowspan="2">정부지원금</td><td rowspan="2">30,000원</td><td>1~5회기 26,660원</td><td>1~5회기 23,330원</td></tr><tr><td>6회기 26,700원</td><td>6회기 23,350원</td></tr><tr><td rowspan="2">본인부담금</td><td>1~5회기 3,300원</td><td>1~5회기 6,660원</td><td rowspan="2">10,000원</td></tr><tr><td>6회기 3,350원</td><td>6회기 6,700원</td></tr></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기관방문(월 6회)			정부지원금	30,000원	1~5회기 26,660원	1~5회기 23,330원	6회기 26,700원	6회기 23,350원	본인부담금	1~5회기 3,300원	1~5회기 6,660원	10,000원	6회기 3,350원	6회기 6,7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기관방문(월 6회)																		
	정부지원금	30,000원	1~5회기 26,660원	1~5회기 23,330원																
			6회기 26,700원	6회기 23,350원																
	본인부담금	1~5회기 3,300원	1~5회기 6,660원	10,000원																
		6회기 3,350원	6회기 6,700원																	
	○ 회당 환급금액(B형) 재가방문(월 4회 결제)																			
월 200,000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h colspan="3">재가방문 (월 4회)</th></tr><tr><td>정부지원금</td><td>45,000원</td><td>40,000원</td><td>35,000원</td></tr><tr><td>본인부담금</td><td>5,000원</td><td>10,000원</td><td>15,000원</td></tr></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재가방문 (월 4회)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재가방문 (월 4회)																			
정부지원금	45,000원	40,000원	35,000원																	
본인부담금	5,000원	10,000원	15,000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A형〉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초·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 심리, 상담, 사회복지, 교육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③ 박사학위 취득 후 심리상담 실무경력 6개월 이상																			
	〈B형〉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언어재활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중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 행동이나 장애인 재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 미술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사회복지학, 재활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3개월 이상																			

항 목	내 용	
사업 성과지표	(A형)	
	성과지표	측정방법
	심리적 문제 예방 및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MMPI-2, 로샤검사, 지능검사, 그림검사(HTP, KFD), BDI(우울검사), PSI, 상태-특성불안검사(STAI), 문장완성검사, 이화방어기제 척도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추가 서비스 구매액	추가 혹은 일반 매출액
	(B형)	
	성과지표	측정방법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회복	- 언어인지능력 향상: P-PA, P-PA2, SI, SSI, 음성총괄평가, U-TAP, 대구실어증검사, K-WAB, SMST, REVT 등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
	※ A형, B형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참고	

성인건강코칭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160217														
목적	운동 지도 및 식생활 개선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병 관련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인 질환의 예방 및 완화로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함														
중복 불가 서비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기간 동안에는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추후 부정수급 등 확인시 지원금액 환수조치)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육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td><td>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성인 (출생연도 기준)</td><td>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병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녀 체질량(BMI) 수치 23 이상 또는 저체중 18.5 미만인자</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성인 (출생연도 기준)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병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녀 체질량(BMI) 수치 23 이상 또는 저체중 18.5 미만인자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성인 (출생연도 기준)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병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녀 체질량(BMI) 수치 23 이상 또는 저체중 18.5 미만인자													
	• 우선순위 ① 성인병 관련 요인 2개 이상 보유자 ② 기타 질병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의사진단 및 소견) ③ 높은 연령														
제출서류	다음의 3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 등 *제출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5인(집단 규모 초과시 추가 제공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도서지역 서비스 제공에 한정) ※ 필요시 추가 확보시설 등록 가능(행정시 승인 사항)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table><tr><th>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r><td>• 신체건강서비스 :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처방 및 신체운동 및 유산소 운동</td><td>월 8회 (주 2회)</td><td>회당 90분</td></tr><tr><td>• 건강 교육 및 영양 관련 상담서비스 : 건강 및 영양교육 정보제공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td><td>반기 1회</td><td>-</td></tr><tr><td>• 기초체력 검사, 건강상태 진단 및 운동 습관 지도 - 건강상태 진단 보고서 작성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td><td colspan="2">분기 1회</td></tr></table>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신체건강서비스 :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처방 및 신체운동 및 유산소 운동	월 8회 (주 2회)	회당 90분	• 건강 교육 및 영양 관련 상담서비스 : 건강 및 영양교육 정보제공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반기 1회	-	• 기초체력 검사, 건강상태 진단 및 운동 습관 지도 - 건강상태 진단 보고서 작성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분기 1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신체건강서비스 :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처방 및 신체운동 및 유산소 운동	월 8회 (주 2회)	회당 90분													
• 건강 교육 및 영양 관련 상담서비스 : 건강 및 영양교육 정보제공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반기 1회	-													
• 기초체력 검사, 건강상태 진단 및 운동 습관 지도 - 건강상태 진단 보고서 작성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분기 1회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table><tr><th colspan="4">월 140,000원</th></tr><tr><th>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d>정부지원금</td><td>126,000원</td><td>112,000원</td><td>98,000원</td></tr><tr><td>본인부담금</td><td>14,000원</td><td>28,000원</td><td>42,000원</td></tr></table>	월 14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98,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42,000원
	월 14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98,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42,000원													
	○ 회당 환급금액 (월 8회 결제)																
<table><tr><th colspan="4">월 140,000원</th></tr><tr><th>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th></tr><tr><td>정부지원금</td><td>15,750원</td><td>14,000원</td><td>12,250원</td></tr><tr><td>본인부담금</td><td>1,750원</td><td>3,500원</td><td>5,250원</td></tr></table>	월 14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5,750원	14,000원	12,250원	본인부담금	1,750원	3,500원	5,250원	
월 14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정부지원금	15,750원	14,000원	12,250원														
본인부담금	1,750원	3,500원	5,250원														
사업 성과지표	<table><tr><th>성과지표</th><th>측정방법</th></tr><tr><td>대사증후군 검사(체성분 검사)</td><td>사전사후 검사</td></tr><tr><td>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만족도 조사)</td><td>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td></tr><tr><td>신규 고용 제공인력 수</td><td>신규 채용 현황, 급여등록 확인</td></tr></table>		성과지표	측정방법	대사증후군 검사(체성분 검사)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신규 고용 제공인력 수	신규 채용 현황, 급여등록 확인							
	성과지표	측정방법															
	대사증후군 검사(체성분 검사)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신규 고용 제공인력 수	신규 채용 현황, 급여등록 확인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해당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 지도사(관리사) 자격이 없는 종목의 경우는 수료증 취득 후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중등 체육 정교사(2급)로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학교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 교육사, 간호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체육학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5060인생예찬! 장년층음악정서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990817																										
목적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악기연주를 통한 음악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기계발에 대한 활력적 동기를 부여함.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없음 / 50세 ~ 64세 이하 성인(출생연도 기준)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높은 연령																										
서비스 내용	<table><tr><th colspan="2">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집단규모</th><th>제공시간</th></tr><tr><td>상담</td><td> - 사전검사 사후검사(총2회):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제공기관에서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 제공기관에서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 검사+상담 총 2회기 차감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 서비스제공 도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가능하나, 바우처 결제 불가 (이 경우 상담 시간 제한 없음) </td><td>이용기간 내 2회</td><td>1:1</td><td>50분</td></tr><tr><td rowspan="3">서비스 제공</td><td> - 음악이론 및 실기: 피아노, 기타, 드럼,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 악기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설비·시설 기준란에 제공 가능한 악기 종류 기재 </td><td>주 1회 (월 4회)</td><td>1:50이하</td><td>60분</td></tr><tr><td> - 정서지원프로그램 (나의 인생 돌아보기, 나만의 소중한 가치 찾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활동 실시) </td><td>월 1회</td><td>1:80이하</td><td>50분</td></tr><tr><td> - 악기공연(합주회) 실시: 이용자가 직접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 1회 실시한 경우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td><td>이용기간 내 1회</td><td>1:20이상</td><td>50분</td></tr></table>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집단규모	제공시간	상담	사전검사 사후검사(총2회):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제공기관에서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 제공기관에서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 검사+상담 총 2회기 차감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 서비스제공 도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가능하나, 바우처 결제 불가 (이 경우 상담 시간 제한 없음)	이용기간 내 2회	1:1	50분	서비스 제공	음악이론 및 실기: 피아노, 기타, 드럼,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 악기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설비·시설 기준란에 제공 가능한 악기 종류 기재	주 1회 (월 4회)	1:50이하	60분	정서지원프로그램 (나의 인생 돌아보기, 나만의 소중한 가치 찾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활동 실시)	월 1회	1:80이하	50분	악기공연(합주회) 실시: 이용자가 직접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 1회 실시한 경우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이용기간 내 1회	1:20이상	50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집단규모	제공시간																						
	상담	사전검사 사후검사(총2회):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제공기관에서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 제공기관에서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 검사+상담 총 2회기 차감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 서비스제공 도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가능하나, 바우처 결제 불가 (이 경우 상담 시간 제한 없음)	이용기간 내 2회	1:1	50분																						
	서비스 제공	음악이론 및 실기: 피아노, 기타, 드럼,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 악기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설비·시설 기준란에 제공 가능한 악기 종류 기재	주 1회 (월 4회)	1:50이하	60분																						
		정서지원프로그램 (나의 인생 돌아보기, 나만의 소중한 가치 찾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활동 실시)	월 1회	1:80이하	50분																						
악기공연(합주회) 실시: 이용자가 직접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 1회 실시한 경우 서비스 제공 1회기 차감		이용기간 내 1회	1:20이상	50분																							
*이용자별 서비스제공 보고서 제공(월 1회)																											

항 목	내 용																																										
집단규모	상담 1:1, 음악이론 및 실기 1:5이하, 정서지원서비스 1:8이하, 악기공연(합주) 1:20이상																																										
서비스기간	6개월(재신청 불가)																																										
제공방식	기관방문형																																										
서비스제공 절차	① 이용자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사정 및 주 호소문제 파악, 심리정서 상태 사정 (사전검사 - 서비스 개시 후 1개월 이내) ② 음악이론 및 실기, 정서지원프로그램 실시: 월 5회 ③ 악기연주(합주) 실시(서비스 기간 중 1회) ④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사후검사를 통한 심리정서 상태 사정, 효과성 증진 정도 파악 (사후검사 - 서비스 종료 전 1개월 이내)																																										
서비스 가격	<table><tr><th colspan="6">월 210,000원</th></tr><tr><th>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h><th>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th><th>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th></tr><tr><td>정부지원금</td><td>189,000</td><td>168,000</td><td>147,000</td><td>126,000</td><td>42,000</td></tr><tr><td>본인부담금</td><td>21,000</td><td>42,000</td><td>63,000</td><td>84,000</td><td>168,000</td></tr></table> ○ 회당 환급금액 (시작하는 달) 상담 1회 + 사전검사 1회 + 서비스제공 3회(음악이론 및 실기 2회 + 정서지원 프로그램 1회) (2, 3, 4, 5번째 달) 서비스제공 5회(음악이론 및 실기 4회 + 정서지원프로그램 1회) (마지막 달) 상담 1회 + 사후검사 1회 + 합주 1회 + 서비스제공 2회(음악이론 및 실기 1회 + 정서지원프로그램1회) <table><tr><th>구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th><th>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h><th>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th><th>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th></tr><tr><td>정부지원금</td><td>37,800</td><td>33,600</td><td>29,400</td><td>25,200</td><td>8,400</td></tr><tr><td>본인부담금</td><td>4,200</td><td>8,400</td><td>12,600</td><td>16,800</td><td>33,600</td></tr></table>	월 21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189,000	168,000	147,000	126,000	42,000	본인부담금	21,000	42,000	63,000	84,000	168,00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37,800	33,600	29,400	25,200	8,400	본인부담금	4,200	8,400	12,600	16,800	33,600
월 21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189,000	168,000	147,000	126,000	42,000																																						
본인부담금	21,000	42,000	63,000	84,000	168,00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대상이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37,800	33,600	29,400	25,200	8,400																																						
본인부담금	4,200	8,400	12,600	16,800	33,600																																						

항 목	내 용	
사업 성과지표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악기(음악)교육 제공인력	
	• 관련 악기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악기 범위: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 악기분류 범주 내의 유사 악기 서비스 제공 가능	
	※ 전공악기 증빙 :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전사후검사 /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③ 심리상담교사	
	④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심리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심리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심리상담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심리상담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④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사업장의 경력증명서로 확인. 자원봉사활동은 경력 미인정)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pqi.or.kr(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 바람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노인

건강나눔안마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080117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육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td><td>만 65세 이상 노인①, 연령 제한 없음②, ③ (출생연도 기준)</td><td>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 제한 없음)</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①, 연령 제한 없음②, ③ (출생연도 기준)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①, 연령 제한 없음②, ③ (출생연도 기준)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 제한 없음)																		
	• 우선순위 - ①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③ 국가유공자 ④ 고연령																			
제출서류	<table><tr><th colspan="4">※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th></tr><tr><td colspan="4">①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td></tr><tr><td colspan="4">②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td></tr><tr><td colspan="4">③ 국가유공자증,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중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td></tr></table>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①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②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③ 국가유공자증,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중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①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②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③ 국가유공자증,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중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서비스 내용	<table><tr><td colspan="2">• 집단규모 : 1:1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td><td></td><td></td></tr><tr><th colspan="2">서비스 내용</th><th>제공주기</th><th>제공시간</th></tr><tr><td colspan="2">•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td><td>월 4회 (주 1회)</td><td>회당 60분</td></tr></table>				• 집단규모 : 1:1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월 4회 (주 1회)	회당 60분				
• 집단규모 : 1:1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월 4회 (주 1회)	회당 60분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 - 정부지원금 15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회당 금액 - 정부지원금 38,000원, 본인부담금(회별환급금) 4,000원																			
사업 성과지표	<table><tr><th>성과지표</th><th>측정방법</th></tr><tr><td>건강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td><td>ADL 검사, 간단신체수행검사(SPPB) 등</td></tr><tr><td>이용자 만족도</td><td>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td></tr></table> ※ 사전·사후 검사도구 사례 및 설문지는 제주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 효과 측정 척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건강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ADL 검사, 간단신체수행검사(SPPB) 등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										
성과지표	측정방법																			
건강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ADL 검사, 간단신체수행검사(SPPB) 등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행복감(옥스퍼드 행복질문지)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250117								
목적	치매 위험 혹은 발병률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신체자극 및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욕구기준</th></tr><tr><td>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td><td>만 6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td><td>CIST(인지선별검사) 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 (인지저하 포함)</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CIST(인지선별검사) 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 (인지저하 포함)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CIST(인지선별검사) 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 (인지저하 포함)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낮은 연령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 • 보건소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 CIST(인지선별검사)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회당 금액 - 정부지원금 36,000원, 본인부담금(회별환급금) 4,000원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5인(집단 규모 초과시 추가제공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1. 기본서비스 • 인지기능 향상 서비스 - 주의력, 기억력 향상 등 인지기능 향상 서비스 • 신체자극 서비스 - 신체재활 및 근력 운동, 감각 운동 등 신체자극 서비스 • 사회성 향상 서비스 - 음악, 미술, 공예, 원예활동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 ※ 매월 각 분야별(인지기능향상, 신체자극, 사회성 향상) 각 1회 이상 반드시 서비스 제공	월 4회 (주 1회)	회당 90분						
	2. 건강체크 및 상담, 건강관리 및 식생활 교육 - 혈압, 체성분 검사, 치매위험도 검사, 체력요인 검사 등 - 건강관리, 식습관 점검, 영양관리 교육 ※ 제공기록지 작성, 결제 미포함	분기 1회							
	3. 부가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 : 전시회, 박물관 등 야외 체험프로그램 - 동일 제공기관 내에서 동일한 제공인력이 각각의 집단에 외부 체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합반하여 진행가능. ※ 제공기록지 작성, 결제 미포함	반기 1회							

항 목	내 용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CIST(인지선별검사), KDRS-2(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노인 우울 척도, 자아존중감, 노인인지기능 검사 등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신규 고용 제공인력 수	신규 채용 현황, 급여등록 확인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재활(상담, 심리), 노인교육, 음악, 미술, 공예 중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인지 중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신체자극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및 체육 관련(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체크 및 상담, 건강관리, 식생활 교육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체육학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 기준 (추가사항)	※ 단일 제공 기관 내에서 동일한 제공인력이 각각의 집단에 대해 외부체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합반하여 진행 가능. 단, 이 경우 반드시 보조인력 1명 이상 배치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1

■ 청년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지정된 제공기관만 해당 서비스 제공가능, 서비스 진행 여부 변동가능성 있음(3월 중 확정 예정)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990401		
목적	비만 또는 저체력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중복 불가 서비스	성인건강코칭서비스, 장애인스포츠킴강좌 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과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연령	육구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성인 중 남,녀 체질량(BMI) 수치 23 이상 또는 저체중 18.5 미만인 자
우선순위 : ① 인바디 결과 과체중이상 ② 고연령순			
제출서류	다음의 구비서류 중 택 1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직장인건강검진 결과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결과지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인 ~ 1:4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재신청 1회 가능, 최대 6개월 지원)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월 8회 (1:1 주 2회)	회당 60분
		월 12회 (1:2 주 3회)	
		월 12회 (1:3 주 3회)	회당 70분
		월 12회 (1:4 주 3회)	회당 90분
	- 건강 교육 및 영양 관련 상담서비스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월 1회) ※ 제공기록지 작성, 결제 미포함	월 1회	회당 60분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제공기록지 작성, 결제 미포함	분기 1회	회당 60분
서비스 가격	월 240,000원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회당 환급금액 (1:1인 월 8회 결제, 1:2인~4인 월 12회 결제)		
	구분	1:1인	1:2인~4인
	정부지원금	27,000원	18,000원
	본인부담금	3,000원	2,000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 향상		인바디(체성분측정기), 기초체력 검사 측정
	신체 균형 능력 향상		신체 불균형 검사 지수 분석
	이용자 만족도 향상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등록 가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재지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제주시	삼도이동	국민체력ES코칭 (제주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화번호
			064-712-1972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2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사업코드	006001											
목적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서비스 대상	<table><tr><th>소득기준</th><th>연령</th><th>욕구기준</th></tr><tr><td>중위소득 70%미만</td><td>65세 미만</td><td>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해당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tr></table>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중위소득 70%미만	65세 미만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해당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득기준	연령	욕구기준									
중위소득 70%미만	65세 미만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해당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계층 ③ 높은 연령순												
서비스 내용	- 집단규모 : 1:1인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기간 :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table><tr><th>서비스내용</th><th>유형</th><th>제공시간</th></tr><tr><td rowspan="3">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td><td>A형</td><td>월 24시간</td></tr><tr><td>B형</td><td>월 27시간</td></tr><tr><td>C형</td><td>월 40시간</td></tr></table>			서비스내용	유형	제공시간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A형	월 24시간	B형	월 27시간	C형
서비스내용	유형	제공시간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A형	월 24시간										
	B형	월 27시간										
	C형	월 40시간										
서비스 가격	월 427,200원											
	A형 (월 24시간)	구분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427,200원									
		본인부담금	면제									
		나형 (기준중위소득 소득 70%이하)										
		401,570원										
		25,630원										

	B형 (월 27시간)	월 480,600원		
		구분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기준중위소득 소득 70%이하)
		정부지원금	466,180원	451,760원
		본인부담금	14,420원	28,840원
	C형 (월 40시간)	월 712,000원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정부지원금	712,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건강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ADL 검사, 간단신체수행검사(SPPB) 등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지율, 이용자 만족도, 제공인력 만족도 등	
제공인력 자격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03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항 목	내 용																																																					
사업코드	일상돌봄 A형 500101 일상돌봄 B형 500801 일상돌봄 C형 500301 일상돌봄 식사·영양관리서비스 500401 일상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500501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500601 *전년도 신청자 사업종료 전까지 코드유지 기본서비스 B-1형 500201																																																					
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소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160%초과 시 100% 전액 자부담) ○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9~39세)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가구기준 (돌봄필요 청·중장년) 주민등록상 1인가구(동거가족이 있더라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청·소년)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실질 동거 모두 포함) ○ 욕구기준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명시된 진단서, 추천서 등에 의해 판단 (돌봄필요 청·중장년) 돌봄필요성, 돌봄자 부재 요건 충족시 (가족돌봄청·소년)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필요성,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충족시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복불가	현재 해당 이용자가 받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의 내용이 일상돌봄서비스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경우 지역에서 판단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우선순위 고려 시 후순위로 판단할 수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 가시간병서비스, 보호재가복지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본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서비스 유사성 고려)하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서비스 가격	<table><tr><th colspan="3">서비스 유형</th><th>서비스 총금액(월)</th><th>소득수준</th><th>본인부담금</th><th>정부지원금</th></tr><tr><td rowspan="12">기본 서비스</td><td rowspan="4">돌봄·가사 월36시간</td><td rowspan="4">A형</td><td rowspan="4">660,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면 제</td><td>660,000원</td></tr><tr><td>120% 이하</td><td>(10%) 66,000원</td><td>594,000원</td></tr><tr><td>120~160%</td><td>(25%) 165,000원</td><td>495,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660,000원</td><td>0원</td></tr><tr><td rowspan="4">돌봄·가사 월72시간</td><td rowspan="4">C형</td><td rowspan="4">1,320,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면 제</td><td>1,320,000원</td></tr><tr><td>120% 이하</td><td>(10%) 132,000원</td><td>1,188,000원</td></tr><tr><td>120~160%</td><td>(25%) 330,000원</td><td>990,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1,320,000원</td><td>0원</td></tr><tr><td rowspan="4">가사만 월24시간</td><td rowspan="4">B형</td><td rowspan="4">432,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면 제</td><td>432,000원</td></tr><tr><td>120% 이하</td><td>(10%) 43,200원</td><td>388,800원</td></tr><tr><td>120~160%</td><td>(25%) 108,000원</td><td>324,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432,000원</td><td>0원</td></tr></table>	서비스 유형			서비스 총금액(월)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서비스	돌봄·가사 월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24시간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총금액(월)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서비스	돌봄·가사 월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24시간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항 목	내 용							
특 화 서 비 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총금액(월)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관리	228,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120~160%		(30%) 68,400원		159,600원	
			160% 초과		(100%)228,000원		0원	
		영양관리	260,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260,000원		0원
		병원동행 서비스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심리지원 서비스	240,000원 (월 4회)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기본서비스 이용 시간당 가격〉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급여) 단가와 동일 (백원 이하 단위 반올림)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5회 재신청 가능)							
우선순위	①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따른 돌봄 필요도 평가점수 및 고독사 위험정도 등 고립 척도 ② 가족돌봄청·소년 주돌봄자 또는 단독돌봄자 여부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⑤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별 제공인력 별도의 자격기준 확인 요청 ○ (돌봄서비스)							

항 목	내 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를 2명이 각각 제공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래의 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복지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가사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복지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식사관리서비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장 자격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영양관리서비스) (필수인력) -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2)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3)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장 자격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병원 동행 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항 목	내 용						
	○ (심리 지원 서비스)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마)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지원 기간	제공주기	특화서비스 선택가능 갯수	서비스 내용
	기 본 서 비 스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6개월	A형	월 36시간 (주 3회, 월 12회, 180분)	1개	○재가돌봄(신체지원, 일상지원) ○가사지원청소·세탁·식사 ※ B형의 경우, 가사지원만 가능
				B형	월 24시간 (주2회, 월 8회, 180분)	2개	
				C형	월 72시간 (주6회, 월 24회,180분)	신청불가	
				D형	돌봄서비스 미선택	2개	
	특 화 서 비 스	식사 관리 서비스	6개월	주 1~2회, 월8회, 60분		○식사지원	
		영양 관리 서비스	6개월	주 1~2회, 월8회, 60분		○사전검사 ○식사지원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6개월	월 16시간 한도		○병원 동행(자택출발~귀가) ○접수·수납·진료 동행 등 ○입·퇴원 지원, 검사, 약국 동행,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 주기적으로 날짜가 정확히 정해진 경우만 신청가능 ※ 이동비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 차량은 지원되지 않음.	
		심리지원 서비스	6개월	월 4회		○사전,사후검사(각1회/90분) ○개인상담 4회(회당 50분) ○개인상담 4회 중 1회는 필요시 집단상담으로 대체 가능(선택) (회당100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항 목	내 용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세분화 내용	세부 유형	①식사관리형	②영양관리형		
	내용	-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등 배달 월8회, 주1-2회	○ 사전검사 초기 1회 - 간이영양검사 등을 통한 식습관, 건강 상태 파악 식약처의 영양지수(NQ),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		
		일반식	○ 식사지원(월8회, 주1-2회) -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등 배달		
		-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 식사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 필요한 경우 식단 구성 시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등 참고 (일부 급식 관리지원센터 식단 공개 중)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3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	
			영양관리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 ①유인물 제공, ②주기적 상담 (문자, 메일, SNS, 전화, 대면 등), ③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 대면 방식(대면 상담, 집합교육)은 월 1회 이상, 비대면 방식 (문자, 유인물, SNS 등)은 주 1~3회	
				※ 영양관리관련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통 (구글에서 검색),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등 참고	
				- 식사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항 목	내 용		
	세부 유형	①식사관리형	②영양관리형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 국산업인력 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 산업기사· 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26년에는 반드시 채용) - (그 외 제공인력)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 국산업인력 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 산업기사· 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가격산정	월 228,000원(총8회) (배달료 포함 1식당 9천5백원 기준(3식))	월 260,000원(총8회+영양관리) (배달료 포함 1식당 1만원 기준(3식) + 영양 관리)
제공방식	재가방문형(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기관방문)		
안전관리 기준	○ 2025년부터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상호협력동의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은 신규(또는 재판정)부터 적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공인력(연 2회) 안전교육 실시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제공인력에 대해 상해, 산재보험 가입 ○ 관련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관리		
결제방법	▶ 회당 실시간 결제 ※ 제공기관에서 안내하는 계좌번호로 본인부담금 납부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구비서류> p.94 참고

구 비 서 류

1. 체험형 서비스 추가 구비서류

서비스명	구비서류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지원서비스	■ 야외활동 시 차량 보험가입 ■ 체험활동 시 여행자 보험(소멸형) 가입 ■ 야외/체험활동에 따른 보호자 동의서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	■ 야외활동 시 차량보험 가입 ■ 야외활동에 따른 보호자 동의서
어르신기능향상 서비스	■ 이용자 야외 체험활동 참가신청서 ■ 이용자 야외 체험활동 당일 건강상태신고서 ■ 여행자 보험(소멸형) 가입 ■ 야외활동 시 차량보험 가입

※ 야외/체험활동 관련 보호자 동의서는 보호자 서명이 원칙

2. 재신청 구비서류

서비스명	구비서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신규신청과 동일 서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성인건강코칭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3. 이용자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초기상담기록지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 ☐ 사전검사 결과지 ☐ 서비스 제공 일정표 / 제공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 ☐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 사후검사 결과지 ☐ 변경계약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해당시)

등록사항 변경 서류 안내

변경사항	구비서류	비고
계좌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변경계좌 사본	
지위승계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지위승계사실 확인 서류 - 양도 · 양수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의 변경)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제공인력 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각서 •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 서비스 운영계획서 • 정규직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시확인서, 시간제인 경우 인정시간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관리책임자 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각서 • 서비스 운영계획서	
대표자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의 변경) • 법인 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대표자, 변경 임원) • 서비스 운영계획서 ※ 대표자 변경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 사항은 지위승계 절차 따름	
소재지 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 대장, 평면도 • 사업자등록증(소재지 변경)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서비스 지역 추가	• 신규 서비스 등록 서류와 동일	
추가확보 시설등록	• 추가확보시설 이용확인서 • 시설 이용 계약서 • 건축물대장, 평면도 • 보험증권사본(건물화재보험, 이용자 배상보험) • 안전관리 계획서, 시설 비상 연락망 • 서비스 운영 계획서	
휴 · 폐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 · 폐업 신고서 *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추가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이관 목록표, 망실 및 훼손 목록표 포함 • (폐업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이용자 조치 계획서	
기타사항	•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이용자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인력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합의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장기부재, 이사, 소득 및 가구원의 변동, 질병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공인력에게 알려 주십시오.
3. 이용자는 제공인력 및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일상돌봄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대상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CCTV, 웹캠, 녹음기 등) 설치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공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설치 사실과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Ⅱ. 제공인력의 권리와 의무

1. 제공인력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일상돌봄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이용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인력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 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위기사상 등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3. 제공인력은 이용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성 명 : ☐ 서비스 이용자
(서 명)

성 명 : ☐ 제공인력
(서 명)



사회서비스 Q&A

Q 이용자 서비스 이용 제한

- A**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동일기간 내 중복수혜 불가
 - 분류1.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교육청바우처 사업 등 타 기관 바우처 서비스(동일영역)
 - 분류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비만) 아동 건강관리
 - 분류3.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특화(심리지원서비스) 중복 불가

Q 제공인력이 타 기관과 중복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주 근로시간이 많고 근로소득이 높은 기관에서 가입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Q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로 제공인력이 될 수 있나요?

- A**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부합하였을 때 제공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예)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Q 바우처 포인트 미이용분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A** 적용대상 사업 :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
- 해당 월의 바우처 잔량은 다음달까지 이월되므로 해당 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다음달에 한하여 보강이 가능. 단, 서비스 종료 월은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고 해당 월에 소멸
 - 시군구는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이 전혀 없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자격 상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 타 지역으로 전출(이사)을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이후 취득한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합니다.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Q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 시 자동이체가 중지되나요?

- A**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해놓은 경우, 서비스 해지가 되더라도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대상자와 은행 간의 계약이므로, 서비스 해지 후에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도록 서비스 중지 후 자동이체 설정 은행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서비스 제공기간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 A** 제공기관의 사업 등록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함.
- 과세사업(과세·면세 겸업) : 부가세 신고
 - 면세사업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 참고로, 아래의 법률에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영역의 범위에 사회서비스 사업이 해당이 되오니(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면세), 아래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공기관 사업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①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영역의 범위) 제15호

Q 이용자가 대상자 선정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다가 우리 기관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 A** 첫 한달이 지난 후에도 이용 못한 기간에 대한 바우처 포인트는 결제 불가합니다.
- 예) 2월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었으나 3월에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2월 바우처 포인트는 사용불가하며, 5월 바우처 포인트만 사용 가능

Q 서비스를 받던 중 나이 조건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나요?

- A**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받던 중 나이를 넘겨도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Q 제공인력 급여등록 중 '월급여'와 '실월급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A** 급여'는 바우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 중 제공인력의 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실월급여'는 제공 인력이 해당 기관에 재직하여 실제 받게 되는 급여(바우처 급여+바우처 외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실월급여에는 바우처 매출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에 기관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을 경우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 대표자가 서비스 제공 시, 대표자에 대한 급여 등록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사업자등록번호) 하는 경우 제공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폐업처리 절차를 통해 기존 센터를 정리한 후 신규기관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Q 서비스재신청 이용자가 사용하던 카드가 결제되지 않을 때

- A** 서비스 재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시 카드 발급 서류에 동의를 하신 경우 카드가 재발급 처리되어 이전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으로 인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신 경우, 재발급 후에 소급결제가 가능합니다.

Q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조치 방법**

A

본인부담금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이용하기로 한 월이 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전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하는 월말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충분히 고지·독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 **평생교육원, 학원, 태권도 체육관 운영 시설에서 사무실 및 사무용품을 공동 사용하여 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A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평생교육원, 학원, 태권도 체육관 운영 시설에서 사무실 및 사무품을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공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5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1,675,000
2인	2,753,000
3인	3,518,000
4인	4,269,000
5인	4,976,000
6인	5,646,000
7인	6,292,000
8인	6,939,000
9인	7,585,000
10인	8,232,000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3,000	85,040	19,780	-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7,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32,000	93,920	19,780	
2인	4,326,000	154,353	90,811	156,003
3인	5,528,000	196,183	133,680	198,908
4인	6,708,000	240,373	180,800	244,322
5인	7,820,000	282,731	235,278	288,623
6인	8,872,000	320,327	280,627	330,759
7인	9,888,000	354,970	320,452	369,522
8인	10,904,000	386,692	357,966	407,097
9인	11,920,000	431,297	411,255	461,679
10인	12,936,000	461,679	447,286	505,795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0,000	110,420	34,459	
2인	5,113,000	181,663	124,483	184,014
3인	6,533,000	232,951	171,506	236,603
4인	7,928,000	282,731	235,278	288,623
5인	9,241,000	330,759	292,300	342,866
6인	10,485,000	386,692	357,966	407,097
7인	11,685,000	431,297	411,255	461,679
8인	12,886,000	461,679	447,286	505,795
9인	14,087,000	505,795	496,019	551,607
10인	15,288,000	551,607	545,985	599,237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9,000	118,821	46,072	-
2인	5,506,000	196,177	133,680	198,905
3인	7,036,000	252,203	196,416	256,716
4인	8,537,000	311,031	269,976	320,322
5인	9,952,000	354,964	320,449	369,517
6인	11,291,000	407,092	382,076	431,294
7인	12,584,000	461,699	447,279	506,004
8인	13,877,000	506,004	496,008	552,230
9인	15,170,000	552,230	545,970	599,810
10인	16,464,000	599,810	591,277	673,463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28,000	136,981	66,857	-
2인	6,293,000	225,915	162,782	229,454
3인	8,041,000	288,617	243,019	295,134
4인	9,757,000	354,964	320,449	369,517
5인	11,374,000	407,092	382,076	431,294
6인	12,904,000	461,699	447,279	506,004
7인	14,382,000	552,230	545,970	599,810
8인	15,860,000	599,810	591,277	673,463
9인	17,338,000	673,463	654,281	792,926
10인	18,815,000	673,463	654,281	792,926

■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67,000	144,910	77,612	-
2인	6,686,000	240,373	180,800	244,322
3인	8,544,000	311,026	269,978	320,327
4인	10,367,000	369,522	337,785	386,692
5인	12,084,000	431,297	411,255	461,679
6인	13,711,000	505,795	496,019	551,607
7인	15,281,000	551,607	545,985	599,237
8인	16,851,000	599,237	591,296	671,097
9인	18,421,000	671,097	654,311	792,963
10인	19,991,000	792,963	752,078	1,022,158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52,028	1,022,274

참고 2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2025년)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24년생	만 36세	1989년생	만 71세	1954년생
만 2 세	2023년생	만 37세	1988년생	만 72세	1953년생
만 3 세	2022년생	만 38세	1987년생	만 73세	1952년생
만 4 세	2021년생	만 39세	1986년생	만 74세	1951년생
만 5 세	2020년생	만 40세	1985년생	만 75세	1950년생
만 6 세	2019년생	만 41세	1984년생	만 76세	1949년생
만 7 세	2018년생	만 42세	1983년생	만 77세	1948년생
만 8 세	2017년생	만 43세	1982년생	만 78세	1947년생
만 9 세	2016년생	만 44세	1981년생	만 79세	1946년생
만 10세	2015년생	만 45세	1980년생	만 80세	1945년생
만 11세	2014년생	만 46세	1979년생	만 81세	1944년생
만 12세	2013년생	만 47세	1978년생	만 82세	1943년생
만 13세	2012년생	만 48세	1977년생	만 83세	1942년생
만 14세	2011년생	만 49세	1976년생	만 84세	1941년생
만 15세	2010년생	만 50세	1975년생	만 85세	1940년생
만 16세	2009년생	만 51세	1974년생	만 86세	1939년생
만 17세	2008년생	만 52세	1973년생	만 87세	1938년생
만 18세	2007년생	만 53세	1972년생	만 88세	1937년생
만 19세	2006년생	만 54세	1971년생	만 89세	1936년생
만 20세	2005년생	만 55세	1970년생	만 90세	1935년생
만 21세	2004년생	만 56세	1969년생	만 91세	1934년생
만 22세	2003년생	만 57세	1968년생	만 92세	1933년생
만 23세	2002년생	만 58세	1967년생	만 93세	1932년생
만 24세	2001년생	만 59세	1966년생	만 94세	1931년생
만 25세	2000년생	만 60세	1965년생	만 95세	1930년생
만 26세	1999년생	만 61세	1964년생	만 96세	1929년생
만 27세	1998년생	만 62세	1963년생	만 97세	1928년생
만 28세	1997년생	만 63세	1962년생	만 98세	1927년생
만 29세	1996년생	만 64세	1961년생	만 99세	1926년생
만 30세	1995년생	만 65세	1960년생	만 100세	1925년생
만 31세	1994년생	만 66세	1959년생	만 101세	1924년생
만 32세	1993년생	만 67세	1958년생	만 102세	1923년생
만 33세	1992년생	만 68세	1957년생	만 103세	1922년생
만 34세	1991년생	만 69세	1956년생	만 104세	1921년생
만 35세	1990년생	만 70세	1955년생	만 105세	1920년생

발행일 2025년 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63144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전화: (064) 722-7052~7053 팩스: (064)722-7054
홈페이지: www.jejucsi.or.kr
인쇄처 성민출판
